

2023회 계 연 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해 양 수 산 부 소관
농 촌 진 흥 청 소관
산 림 청 소관
해 양 경 찰 청 소관

2024. 9.

농 림 축 산 식 품 해 양 수 산 위 원 회

2023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24.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소관부처 회부 결산

가. 농림축산식품부소관

- (1) 일반회계
-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3)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 (4)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6) 양곡관리특별회계
- (7)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8) 농지관리기금
- (9)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10) 양곡증권정리기금
- (11)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12) 축산발전기금
- (1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나. 해양수산부소관

- (1) 일반회계
-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3) 교통시설특별회계
- (4)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 (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6) 수산발전기금

다. 농촌진흥청소관

- (1) 일반회계
-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3)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라. 산림청소관

- (1) 일반회계
-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3)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마. 해양경찰청 소관

- (1) 일반회계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4년 5월 31일

나. 회부일자 : 2024년 6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417회국회(임사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8. 26)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농촌진흥청 ·
산림청 · 해양경찰청)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9. 3.)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농촌진흥청 ·
산림청 · 해양경찰청)

상정 · 심사 · 의결(원안의결)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9. 4.)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농촌진흥청 ·
산림청 · 해양경찰청)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원안의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총괄

-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기금의 세입(수입) 결산과 관련하여, 총계 기준으로 일반회계 등 6개 회계와 농산물가격안정 기금 등 7개 기금의 세입예산 및 수입계획액은 27조 6,982억원이고, 이 중 28조 8,740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27조 8,108억원이 수납 되었으며, 미수납액 1조 633억원이 발생하였음.
- 세출(지출) 결산과 관련하여, 총지출 기준으로 세출예산 및 지출 계획 규모는 32조 4,126억원이고, 전년도 이월 등에 따라 예산(지출)현액은 33조 5,344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31조 9,571 억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6,815억원과 불용액 1조 1,963 억원이 각각 발생하였음.
- 예비비지출과 관련하여, 예비비 배정액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45억 4,400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음.

【 2023회계연도 세입(수입)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수입계획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대비 수납증감 (B-A)
예 산	15,985,371	16,710,126	16,687,746	-	22,377	702,375
기 금	11,712,820	12,163,899	11,123,012	-	1,040,887	△589,808
총 계	27,698,191	28,874,025	27,810,758	0	1,063,264	112,567

【 2023회계연도 세출(지출)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출 예산액 (지출 계획액)	예산(지출)결정 후 증감액				예 산 (지출) 현 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전용	기타 증감				
예산	20,699,787	932,558	189,088	209,704	21,411	21,821,437	20,834,119	672,694	314,620
기금	11,712,820	178	-	-	-	11,712,997	11,123,016	8,797	881,634
총계	32,412,607	932,736	189,088	209,704	21,411	33,534,434	31,957,135	681,491	1,196,254
총지출	17,357,345	435,051	94,544	209,704	21,411	17,950,265	17,032,647	500,452	417,163

* 총지출: 총계-내부거래(회계간·회계기금간·회계내계정간 거래)-여유자금

② 사업별 검토

- 첫째,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에 관한 사항
 - 내역사업인 ‘WFP 식량원조 사업’은 식량 위기국을 대상으로 쌀을 원조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식량원조협약에 가입한 2018년부터 매년 쌀 5만톤을 원조하여 왔고, 금년부터는 쌀 10만톤을 원조하고 있음.
 - 그런데 동 사업의 시행 초기와 비교해 볼 때, 원곡대보다는 물류비 등 부대비용의 소요가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둘째,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내역사업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은 농업 분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보조예산 42억원 중 실제 8억 5,800만원만이 집행되어 실효행률이 20.4%로 나타났음.
 - 실효행 부진은 부지 변경, 지방비 확보 지연, 각종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의 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의 사전 준비 부족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 미흡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할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급증하고 농가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기숙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 내역사업인 ‘사업다각화 사업’은 식량작물 생산과 연계한 선별·저장·가공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실집행률이 32.5%에 그치고 있음.

□ 실집행 부진은 건축공사 인허가의 지연, 지방비 확보의 지연, 사업계획의 변경, 계약체결 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하여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연내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는 등 연례적인 예산 이월 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넷째,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 내역사업인 ‘김치원료공급단지구축 사업’은 중소 김치 제조업체가 김치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도록 대규모 저온 저장시설, 절임 생산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실집행률은 16.3%에 그치고 있음.

□ ‘김치원료공급단지구축 사업’의 실집행 부진으로 구축 일정이 계획 대비 1년 6개월가량 지연되고 있으므로,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집행 부진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 다섯째,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사업’에 관한 사항

□ 내역사업인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소비자의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 시 할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통경로 배정액 1,284억원 중 60.3%를 대형유통경로를 통하여 집행하였음.

□ 대형유통경로에 지원이 집중되는 경우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지역농협, 친환경매장 등 중소유통경로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중소유통경로에 대한 사업비 집행 비중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여섯째,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농촌에 주거안정, 육아부담 완화 등 청년층의 수요를 고려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간접보조사업자의 예산 실집행률은 3.2% 미만이며, 조성사업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음.

□ 청년농촌보급자리 조성사업이 스마트팜 등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는 만큼,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요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 중인 유사 사업과의 차별화를 도모하며, 조성사업의 공정률·주민만족도 등을 포괄하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 일곱째, ‘과수 무병묘목 생산·공급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과수 무병묘목(無病苗木) 생산·공급지원 사업은 우리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무병묘목의 생산 및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기준 주요 5대 과수작물의 무병묘목 공급률 10.3%를 달성하였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런데 사과·배·감귤의 무병묘목 공급률은 각각 12.3%, 11.7%, 21.9%이었던 반면, 포도는 2022년까지 무병묘목 공급 실적이 없다가 2023년에서야 7.1%의 공급률을 보였으며, 복숭아는 1주의 무병묘목도 공급하지 못하는 등 과수 작물별로 무병묘목 공급 실적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무병묘목이 과수 작물별로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여덟째, ‘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 동 사업은 축산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상담을 지원하고 동물복지축산인증 상품을 활성화하는 사업인데, 동물복지축산인증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축종별 편차가 발생하는 한편, 사후관리가 소홀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아홉째,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사업’에 관한 사항
- 동 사업은 유기·유실동물의 보호 및 분양 여건 개선을 위해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2023년 16개소)의 신축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최근 4년간 해당 사업의 실행률 평균이 26.8%에 불과한 실정임.
- 주요 집행부진 사유를 살펴보면, 사업진행 중 사업계획 및 설계 변경, 관계기관 업무협약 지연, 인허가 지연 등 대부분 사업관리 미흡에 따른 것이고, 다수의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주민반대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별 사업별로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구체적인 집행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해양수산부 소관>

① 총괄

□ 2023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기금의 세입(수입) 결산과 관련하여, 총계 기준으로 일반회계 등 5개 회계와 수산발전기금의 세입예산 및 수입계획은 2조 5,307억원이고, 이 중 2조 7,068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6,336억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730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세출(지출) 결산과 관련하여, 총지출 기준으로 세출예산 및 지출계획 규모는 6조 4,332억원이고, 전년도 이월 등에 따라 예산(지출)현액은 6조 7,574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6조 2,075억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2,466억원과 불용액 3,032억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 2023년도 세입(수입)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수입계획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대비 수납증감 (B-A)
예 산	1,695,364	1,826,076	1,773,800	127	52,148	78,436
기 금	835,417	880,753	859,876	-	20,877	24,459
총 계	2,530,781	2,706,829	2,633,676	127	73,025	102,895

【 2023년도 세출(지출)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출 예산액 (지출 계획액)	예산(지출)결정후 증감액				예 산 (지출) 현 액	지출액	다음 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초과 지출	예비비	이·전 용				
예산	7,128,907	220,291	-	216,898	121,694 △121,694	7,566,096	7,078,951	242,803	244,342
기금	835,417	2,090	-	-	-	837,507	859,876	3,866	134,607
총계	7,964,324	222,381	-	216,898	121,694 △121,694	8,403,603	7,938,827	246,669	378,949
총지출	6,433,282	214,685	-	109,478	121,694 △121,694	6,757,445	6,207,523	246,669	303,253

※ 총지출: 총계-내부거래(회계간·회계기금간·회계내계정간 거래)-여유자금

② 사업별 검토

- 첫째,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에 관한 사항
-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은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 이 중 ①어선원직불금은 실제 직불금을 지급받은 인원이 계획 대비 49% 수준(1만5,000명 계획 → 7,458명 지급)으로 편성된 예산 중 49% (180억원 중 89억 5,000만원)를 집행하였음.
- 이는 다른 법령¹⁾상 어업종사 판단기준이 연간 60일 이상인 점, 일부 어종은 연간 조업가능일이 100일 미만인 점과 비교할 때, 어선원들이 직불금 지급조건인 ‘연간 6개월 이상 승선’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므로, 해양수산부는 지급조건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등 예산 집행을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②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은 선정 어선 중 44%만이 실제 예산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선정된 어선이 예산 지급 단계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
-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은 방재연구 등을 위하여

1)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3조(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강원도에 수리모형 실험시설을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예산액 57억 1,500만원 중 99% 해당하는 57억 500만원을 타사업으로 전용²⁾하였음.

□ 동 사업은 당초‘2차원 수로 실험동’을 포함하여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를 건립하려는 계획이었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 중 3차원 수조 실험동을 추가 건립하기로 하면서 타당성재조사 등의 절차³⁾로 사업이 중단되었음.

□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르면 국가(해양수산부)가 행정재산(강원도)에 건물을 건립하고 부지 무상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채납 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여 현재 건립부지가 불확실한 상황임.

□ 따라서 향후 해양수산부는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위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보완하고 부지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셋째,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사업’에 관한 사항

□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사업은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실시설계,

2) 2023년 57억 1,500만원 중 57억 500만원 타사업 전용, 남은 시설부대비 1,000만원은 사업 추진일정 순연으로 불용하여, 2022년에 이어 전액 미집행됨

3) 타당성재조사 추진 중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 타당성재조사” 1차 점검회의 시(’ 23.1월) 타당성재조사 수행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시한 경제성 분석(B/C) 결과가 0.23으로 제시되었는데, 해양수산부는 해당 수치로는 타당성재조사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2023년 2월 타당성재조사를 철회함.

수거 및 처리, 사후관리 등을 통해 해양오염퇴적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준설토투기장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확보 여부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정화사업지로 선정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고, 정화사업이 진행된 해역의 경우에 일부 해역의 경우 여전히 정화기준치를 상회하는 오염도가 확인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정화사업지 선정 시 준설토투기장의 확보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증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업완료해역에 대하여는 오염이 재발 또는 확대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R&D)’에 관한 사항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R&D)은 기후변화 대응, 수산자원 확보 등 국가적인 극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북극해 고위도에서 연구수행이 가능한 친환경 쇄빙연구선을 건조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의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 전액이 교부되었으나 지급된 연구개발비 636억 4,300만원 중 38억 1,5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24년 6월 기준 598억 2,800만원이 미집행된 상황임.

- 현재 남극·북극 관련 연구를 아라온호 1척으로 모두 수행하고 있어 극지 연구수행을 위해서는 신규 쇄빙연구선의 도입이 시급하나, 총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민간의 참여 유인 부족으로 사업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 해양수산부는 총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민간의 참여 유인을 제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ya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섯째, ‘어업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 어업지도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인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은 불법어선 지도·단속에 필요한 국가어업지도선을 대체 및 신규건조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419억원) 중 25%(80억원)를 집행하였음.

-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부정입찰 업체와 계약해지 후 타절준공⁴⁾으로 기성고(39.1%)에 대한 대금(312억원)을 지급하는 한편, 2023년 내 후속업체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연이은 유찰로 건조가 중단되어 준공시기가 지연(당초 2024.1.31. → 2025.12월 이후)되고 있음.

- 이에 기성고의 품질저하로 투입된 사업비(312억원)가 낭비될 소지가 있고, 노후 지도선의 대체가 늦어져 선박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해양수산부는 필요 예산 확보 등 건조가 추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타절준공: 발주자 측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을 뜻함.

□ 여섯째, ‘국가필수선대제도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는 비상사태 발생시 군수물자 및 해상수송체계 유지를 위해 국가필수선박의 선종별 지정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으나, 2024년 현재 선종별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벌크선은 목표 지정척수를 초과하고 있는 반면 유조선의 경우 2021년에 목표 지정척수를 하향조정(16척→12척)하였음에도 2019년 이래 연례적으로 목표 지정척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선종별 취급하는 화물의 종류가 달라 국가필수선박의 선종별 지정목표 달성이 중요하다는 점, 2006년 사업 시작 이후 유조선의 국가필수선박 지정 신청이 저조하여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양수산부는 유조선의 지정 확대를 위해 임금부담 지급률을 상향하는 등의 차등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일곱째, ‘연근해어선감척 사업’에 관한 사항

□ 연근해어선감척 사업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 및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근해어선을 적정 수준으로 감척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 1,325억 7,800만원 중 1,170억 6,800만원이 지자체에 교부되었고, 이 중 936억 3,300만원이 집행(실집행률 70.6%)되었음.

- 동 사업의 경우, 감척희망자가 감척지원금을 예측하기 어렵고, 감정평가 이후 감척지원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신청한 근해어선 중 약 28%가 중도 철회하는 점이 예산 미집행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이 기존 업종별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액에 대해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현 감정평가 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감척희망어업인의 신청철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여덟째, ‘연안국과의 협력(ODA) 사업’에 관한 사항
- 연안국과의 협력(ODA) 사업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연안국과의 우호적 협력 확대와 해외어장에서의 안정적 조업활동을 통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근 5년간 해양수산부의 ODA사업은 2019년 예산액 104억 7,300만원에서 2023년 287억 3,000만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음.
-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2023년 신규 ODA 사업을 선정하면서 총 30개 사업 중 17개 사업은 공모를 실시하지 않았고, 13개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였으나, 이 중 12개 사업에서 1개 기관의 단독응모로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어, 사실상 공모의 취지

가 구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해양수산부 및 전문기관은 사업
발굴노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기관이 해양수산부 ODA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농촌진흥청 소관>

① 총괄

- 2023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 결산과 관련하여, 총계 기준으로 일반회계 등 4개 회계의 당초 세입예산액은 159억 4,300만원이고, 이 중 118억 7,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05억 2,300만원이 수납되고, 13억 5,2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총지출 기준 예산규모는 1조 2,546억 6,8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58억 7,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2,605억 4,400만원이며, 이 중 1조 2,330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55억 6,800만원과 불용액 218억 8,400만원이 각각 발생하였음.

【 2023회계연도 세입 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수입계획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대비 수납증감 (B-A)
예 산	15,943	11,875	10,523	-	1,352	△5,420
기 금	-	-	-	-	-	-
총 계	15,943	11,875	10,523	-	1,352	△5,420

【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구분	세출 예산액 (지출 계획액)	예산(지출)결정후 증감액					예 산 (지출) 현 액	지출액	다음 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 년 이 월	초 과 지 출	예 비 비	이· 전 용	기 타 증 감				
예산	1,254,668	5,876	-	-	11,904 △11,904	-	1,260,544	1,233,092	5,568	21,884
기금	-	-	-	-	-	-	-	-	-	-
총계	1,254,668	5,876	-	-	11,904 △11,904	-	1,260,544	1,233,092	5,568	21,884
총지출	1,254,668	5,876	-	-	11,904 △11,904	-	1,260,544	1,233,092	5,568	21,884

* 총지출: 총계-내부거래(회계간·회계기금간·회계내계정간 거래)-여유자금

② 사업별 검토

□ 첫째, ‘치유농업연구소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 농촌진흥청은 2023년 치유농업연구소 기반구축 사업 토지보상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이로 인해 착공시기를 예측할 수 없음에도 연도 말에 전체 예산의 약 20%에 가까운 10억원의 건립공사 선금을 지급하였음.

□ 또한, 착공이 확정된 후 선금을 지급했어도 무방한 전기 및 통신 공사에 1억 1,600만원의 선금을 집행하였는데, 2024년 8월 현재까지도 건축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사업 추진에 있어 농촌진흥청의 사업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향후 농촌진흥청은 사업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고 토지보상 협의를 원만히 완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신기술보급사업’에 관한 사항

□ 내내역사업인‘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기초 지방자치 단체에 국산밀 생산 전문단지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 지원 대상 2개소 중 1개소의 실집행률이 0.3%에 그쳤음.

□ 또 다른 내내역사업인‘쌀가루 지역 자립형 생산·소비모델 구축 사업’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지역단위로 가루쌀 및 가공용쌀을 소규모 제분하고 이를 활용한 가공품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2023년 지원 대상 8개소 중 1개소는 실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처럼 사업 성과가 부진한 것은 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의 문제와 자격 요건 제약 요인에 대한 검토 부족 등 사업 추진의 기본이 되는 요건을 철저히 점검하지 못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 향후 농촌진흥청은 사업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자격 요건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농촌진흥청이 2023년 3개의 격리도서지역에 36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한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장 구축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14%에 그치고 35억 2,200만원을 이월하는 등 사업 추진 실적이 매우 부진하였음.
- 이는 사업 부지 선정 과정의 지연과 행정절차상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증식장 구축 과정과 절차에 대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향후 농촌진흥청은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사업 계획 수립 시 일정을 현실성 있고 면밀하게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산림청 소관>

① 총괄

- 2023년도 산림청 소관 회계의 세입(수입) 결산과 관련하여, 총계 기준으로 일반회계 등 5개 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조 1,701억원이고, 이 중 1조 3,072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1,898억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1,171억원이 발생하였음.
- 세출(지출) 결산과 관련하여, 총지출 기준으로 세출예산액 규모는 2조 4,837억원이고, 전년도 이월 등에 따라 예산(지출)현액은 2조 6,34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2조 5,366억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678억원과 불용액 298억원이 각각 발생하였음.

【 2023회계연도 세입(수입) 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수입계획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대비 수납증감 (B-A)
예 산	1,170,052	1,307,244	1,189,812	315	117,117	19,760
기 금	-	-	-	-	-	-
총 계	1,170,052	1,307,244	1,189,812	315	117,117	19,760
총수입	420,338	494,059	376,627	315	117,117	43,711

【 2023회계연도 세출(지출) 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구분	세출 예산액 (지출 계획액)	예산(지출)결정후 증감액					예 산 (지출) 현 액	지출액	다음연 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 이월	초과 지출	예비 비	이· 전용	기타 증감				
예산	3,328,152	87,577	38	83,254	13,461 △13,461	-	3,499,021	3,401,453	67,798	29,770
기금	-	-	-	-	-	-	-	-	-	-
총계	3,328,152	87,577	38	83,254	13,461 △13,461	-	3,499,021	3,401,453	67,798	29,770
총지출	2,483,663	87,577	38	62,880	13,461 △13,461	-	2,634,158	2,536,590	67,798	29,770

* 총지출 : 총계-내부거래(회계간·회계기금간·회계내계정간 거래)-여유자금

② 사업별 검토

□ 첫째, ‘배상금 및 기타보전금’에 관한 사항

□ 산림청은 소송업무와 관련된 배상금 및 기타보전금 예산을 일반회계 및 농특회계 6개의 세부사업에 매년 같은 규모로 분산·편성하고 있으나, 해당 예산은 연례적으로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거나 집행실적이 전혀 없어 불용이 반복되고 있음.⁵⁾

□ 이처럼 집행실적이 부진한 원인은 배상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세부사업에서는 소송사무에 관한 사업내역을 편성하고 있지 않고, 기타보전금은 법령상 근거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지는 예산임에도 산림청이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실제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임.

□ 따라서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전혀 없는 배상금과 기타보전금 예산을 매년 같은 규모로 계상하는 것은 국가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최근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 소송업무와 관련된 배상금 및 기타보전금 예산을 일반회계 및 농특회계에 분산 편성하는 것은 프로그램 예산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국가소송 예산이 편성된 ‘국유림 확보 및 관리 사업’에 통합 편성하는 한편,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개선이 필요해 보임.

5) 2023년 결산 기준, 배상금은 예산액(1억 8,500만원)의 97.8%(1억 8,100만원)는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이·전용 등 되었고, 기타보전금(건강보험부담금(의무지출) 및 임업인재해복구긴급지원 사업 제외)의 실행률은 0.0%로 나타났습니다.

□ 둘째, ‘산림과학연구(R&D) 사업’에 관한 사항

□ 최근 4년간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논문 건수는 2020년 356건에서 2023년 264건으로, SCI논문 건수는 2020년 148건에서 2023년 122건으로 각각 감소하였고, 기술이전 계약 건수 및 기술료는 2020년 53건, 15억 2,200만원에서 2023년 30건, 3억 5,300만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 동 사업의 성과지표인‘산림과학논문 영향력 지수(점)’의 성과달성도는 2022년도 98.4%에서 2023년도 87.7%로 2년새 10.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처럼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실적은 정량적, 정성적 측면 모두 하락 추세이므로, R&D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음.

□ 셋째, ‘산림생물종연구(R&D) 사업’, ‘정원산업 기반구축(R&D) 사업’, ‘산림과학연구(R&D) 사업’에 관한 사항

□ 산림청은 2022년도 1월에 국립산림과학원 석·박사 연구원의 보수를 상향조정하고 그 처우개선분을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가 예산집행과정에서 석·박사 연구원의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이 부족하게 되자 해당 부족액을 당초 예산이 편성된 산림생물종연구(R&D) 사업과 프로그램(항)을 달리하는 산림생물종연구(R&D) 사업 및 정원산업기반구축(R&D) 사업을 통해 예산의 이·전용 등 절차 없이 집행하였음.⁶⁾

- 또한, 이러한 예산집행에 대하여 산림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산림청은 향후 예산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및 예산집행지침 등에서 정한 이·전용 절차를 준수하고, 국회가 의결한 세출예산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넷째, ‘긴급별채 사업’에 관한 사항
- 동 내역사업은 산불, 산사태 피해 규모에 따라 집행되므로, 피해규모 등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매년 예산액이 부족하여 예비비 편성 및 이·전용을 통해 집행하는 문제가 있음.
- 최근 5년간 예산액 대비 예비비 비율은 2019년 0%, 2020년 2,847.8%, 2021년 0%, 2022년 3,285.0%, 2023년 651.3%로, 2019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본예산 대비 예비비를 과도하게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같은 기간 지자체 교부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2019년 3.1%, 2020년 4.4%, 2021년 10.5%, 2022년 23.5%, 2023년 53.8%로 급증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6) 구체적으로 상용임금 부족액 2억 9,000만원을 산림생물종연구(R&D) 사업 및 정원산업 기반구축(R&D) 사업에서, 고용부담금 부족액 800만원을 정원산업기반구축(R&D) 사업에서 추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예비비의 과다불용은 「국가재정법」 및 「2023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 상 예비비의 연도 중 시급히 지출해야 할 시급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산림청은 예비비 요구단계에서 실제 소요되는 사업 물량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가능한 예산을 신청하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봄.

□ 다섯째, ‘산림 헬기 도입·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

□ 산림청은 2024년도 미가동 헬기 규모가 15대로 전망됨에 따라 해외에서 산불진화 헬기 7대를 임차하기 위하여 예비비 예산 369억 3,700만원을 배정받아(2023.9.12.), 이 중에서 임차료 335억 7,900만원 전액을 집행하고, 수입통관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33억 5,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는데, 2024년 5월말 기준 실집행액은 예비비 예산의 69.2%인 255억 6,3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처럼 부진한 집행률은 산불출동 비행시간의 추계에서 계획과 집행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한 데 기인한 것으로서, 산림청은 대형헬기(5대) 및 중형헬기(2대) 1대당 150시간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대형이 평균 17시간 52분, 중형이 평균 17시간 21분을 비행하여 계획 대비 11.7% 수준에 불과하였음.⁷⁾

□ 따라서 산림청은 예비비로 배정받은 예산이 과다하게 미집행되는

7) 최근 5년간 봄철산불조심기간(2.1~5.15) 중 대형 및 중형 헬기의 산불출동 횟수 및 비행시간을 살펴 보더라도, 연평균 1,337회에 1,949시간 53분으로 파악되므로, 1회 출동 시 평균 비행시간은 약 1시간 30분(1,949시간÷1,337건) 수준이고 헬기 운영 대수가 37대임을 감안하면, 헬기 1대당 평균 출동 횟수는 36회(1,337회÷37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산림청이 예비비 신청 시 헬기 1대당 비행시간을 100회 출동에 해당하는 150시간으로 기준한 것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추계의 합리성 및 정확성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음.

□ 여섯째, ‘산촌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내내역사업인 ‘산림분야 특성화고 지원사업’은 산림분야 현장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산림사업 기업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고졸 취업 활성화를 통해 젊은 산림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취지로 산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2개 특성화고에 총 6억원을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인데, 사업의 실적인 사업수혜자인 학생들의 취업률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⁸⁾

□ 이와 같은 결과는 산림청이 동 내내역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만 그치고 지속가능한 사업성과를 내기 위하여 학교별 특성을 반영하여 취업에 필요한 연계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 따라서 산림청은 산림분야 특성화고 지원사업이 당초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산림분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 취업 정보 제공 및 취업상담 등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취업률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후관리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8) 산림분야 특성화고 제도가 도입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산림과학고 및 청주농업고의 산림분야 전공 학생들의 산림분야 취업률은 ① 한국산림과학고의 경우, 2018년 74.2%에서 2020년 81.8%로 증가하였다가 2021년 54.2%로 감소 후 2023년은 73.4%로 5년전 취업률에도 못미치는 상태이고., ② 청주농업고의 경우, 2018년 21.6%, 2023년 20.0% 등으로, 한국산림과학고와 비교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경찰청 소관>

① 총괄

- 2023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입 결산과 관련하여, 당초 세입예산액은 53억 8,800만원이고, 이 중 79억 5,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4억 2,3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3,6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고, 미수납액은 24억 9,700만원이 발생하였음.
- 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당초 예산규모는 1조 8,108억 8,1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 등에 따른 예산현액은 1조 8,298억 1,000만원이며, 이 중 1조 8,054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195억 5,900만원과 불용액 47억 7,900만원이 각각 발생하였음.

【 2023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입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일반회계	5,388	7,956	5,423	36	2,497	35

【 2023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출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지출)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 이월	예비비	이체	전용	이용	추경				
일반 회계	1,810,881	18,929	-	-	17,334	15,815	-	1,829,810	1,805,472	19,559	4,779
					△17,334	△15,815					

② 사업별 검토

- 첫째, ‘외사경찰활동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내역사업 중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범처리 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320-02)는 연례적으로 이용(移用) 감액을 통하여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및 인건비 등 타 사업에 사용되고 있음.
 - 2023년에는 예산액(10억 9,300만원)의 65% 수준인 7억 400만원을 지방관서 인건비로 이용(移用)하였는데, 이는 예산 편성단계에서 과거 3년간 선박의 위탁·폐기 건수를 실제 통계보다 높은 수치로 계상함으로써⁹⁾ 민간위탁사업비를 과다계상한 데 따른 것임.
 -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민간위탁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사업을 위한 여유재원 형태로 운영하는 행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진압및전투장비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 내역 사업 중 노후방독면교체 사업은 2019년·2020년 국정감사에서 노후 방독면의 교체율이 42.9%로 매우 낮고 사안이 시급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신설된 사업인데, 해양경찰청은 연례적으로 이를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노후 방탄헬멧교체 구매 등으로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음.

9) 2023년도의 민간위탁사업비의 예산편성 산출내역 상 선박의 위탁 및 폐기 건수(위탁 16척, 폐기 15척)가 실제 3년(2020~2022년) 평균(위탁 15척, 폐기: 3척) 보다 높습니다.

- 이는 국회가 의결한 예산 편성 취지와 다르게 임의적으로 신규 내역사업을 신설하여 집행한 것으로 부적절한 예산집행방식이고, 장기적 계획에 따른 장비의 효율적 구매·관리가 어렵다는 측면에서도 개선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해양경찰청이 노후 방독면교체 사업 예산으로 당초 계획되지 않은 신규 내역사업을 추진한 것은 「국가재정법」상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¹⁰⁾을 위반한 행위로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0) 「국가재정법」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4. 대체토론의 요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농지 임대차사업은 지속적인 수요 감소와 연례집행 부진에도
과다 계상하여 농지연금과 경영회생 지원사업 등 농업인 수요
가 높은 사업들의 예산 부족 현상이 상시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 변경을 최소화하여 국가재정계획의 신뢰성을 높일 방안
을 마련할 것
- 기본형 공익직불금 예산 2,200억원(8%)이 불용되었음. 첫 번째
문제는 기본계획을 12월까지 세운다고 하나 시간이 촉박하고,
두 번째 문제는 준수사항(17가지)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 또
한, 선택직불제 불용액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
을 실시할 것
- 「양곡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는 자체
보유 또는 용자를 통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시장격리곡을 매입
하고 판매대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여야 하는데, 현재 쌀
시장격리는 농협경제지주가 자체 자금 또는 차입을 통해 시장
격리미곡을 우선 매입하고 농식품부가 사후에 정산하는 외상
거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양곡매입 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행기관인 농협경제지주의 자본부담이나 채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금년 정부의 쌀값 하락 대책에도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4년 8월 15일에는 80kg 쌀 기준 17만 7,74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쌀값 하락 방어를 위하여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쌀 시장 격리, 쌀 수요 촉진 정책 등에만 계속 의존하는 것은 미래 지향적인 쌀값 안정 정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쌀 소비 패턴 변화에 맞춰 미곡 정책을 변화시키고 쌀 재배 품종을 다양화하며 쌀 가공 식품 수출 확대 정책을 추진할 것
- 친환경직불금의 단가 상향, 농업재해보험발전 5개년 계획 반영 및 양도세 관련 특례 마련 등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한 과감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한우 사육비 중 사료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측면과 한우 농가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료 구매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을 검토할 것
- 개식용 종식과 관련하여 특히 농촌지역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타 식품접객업으로의 전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원방안 마련에 있어 이 점을 고려할 것
-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살인진드기(SFTS)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과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인체용 백신 및 치료제의 소관
부처인 질병관리청과 협업하여 살인진드기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해양수산부 소관>

- 여수박람회장 정부선투자금 '25년도 일시상환에 대해 YGPA 재무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 설득 노력 필요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쇄빙선 사업을 늦출 수 없으니 사업진행을 위해 재정 당국 설득 노력 필요
- 해양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사업은 식품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24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 되었으므로, 향후에는 관련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일본 정부가 우리 조사선의 독도 주변해역 해양조사 활동에 대해 항의한 바 있고, 해수부장관은 외교적 대응은 외교부 사안이라고 답변한바 있음. 해수부도 일본 항의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할 필요
-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지난해 안전 관리를 위해 편성된 예비비의 집행률이 저조한 바 연내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비비의 편성 및 집행을 철저히 할 필요
- 어촌뉴딜300 사업은 인·허가 기간 소요, 주민 민원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완료 목표를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였으므로, 해양수산부는 각 사업지별 공사 진도 및 예산집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2025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양식등재해대책비 내역사업인 이상수온대응지원 사업 집행 시, 현재 고수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육상 양식장에도 액화산소 공급기 등 장비가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현 지자체에서 굴삭기를 이용한 어항 준설은 효과가 미미하므로, 전문 준설선을 보강하여 준설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어항준설 시스템 구축 필요
- 평택시는 23년간 평택국제여객터미널을 지어서 관리 중에 있으므로 여객터미널 관리의 노하우가 있으며, 새로 지어지는 평택신국제여객터미널도 평택시와 경기평택항만공사, 지역 업체 등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인천항시설관리센터가 위탁업체로 선정된 것은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을 점검해보시기 바람
- 2023년부터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 중으로, 섬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동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지원금 신청 방법을 개선하는 등 사업 방식을 개편하여 시행할 필요

- 여객선에 전기차 선적 시 전기차 이용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전기차 선적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에 전기차 화재에 대응장비가 조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여수신북항 건설사업이 지연된 상황이므로 추가 지연없이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소형선박 수리조선소가 친환경 항만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마련할 필요
- 평택 新국제여객부두 야적장이 부족한 상황으로 新여객터미널 뒤 유희부지에 추가 야적장 부지 확보를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제주 특화 항만 구축 및 동북아 크루즈 모항으로의 발전을 위해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제주신항의 조속한 사업 추진 필요.
-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사업은 2023년 11월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원활한 크루즈 유치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2단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

<농촌진흥청 소관>

- 사업별 성과지표 달성 미달사업이 전체의 15%에 해당하는데, 기재출한 미달 사유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4년 연속 목표를 미달성한 사업도 있으므로 성과지표 관리를 철저할 필요

<산림청 소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산 KA-32 헬기의 엔진 등 핵심부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산림헬기의 가동률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대외리스크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산림헬기 제조국 및 기종을 다변화하는 등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
- 강원도 동해안 지역 등 대형산불 피해지역의 긴급벌채를 추진하면서 예비비를 과다하게 배정받아 실집행률 부진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예비비 추산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국립산림과학원의 R&D 사업에서 논문 건수(SCI 논문 건수)와 기술이전 계약건수 및 기술료 등의 실적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으므로, 정량적·정성적 성과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해양경찰청 소관>

- 해양경찰청은 해양조사 관련 자료를 국회에 성실히 제출할 필요가 있음.
- 해양에서의 구조활동은 악천후 속에서 지원하는 등 위험성이 높으므로, 민간 협력에 대한 획기적 지원책, 보상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무인헬기의 구매비용을 고려할 때 운용시간이 저조하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응급상황 및 불법조업 단속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시 우선순위를 높일 필요가 있음.

5. 소위심사보고의 요지

우리 소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및 산림청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농촌진흥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의 결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총 186건의 시정요구사항과 총 4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음.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하여는

65건의 시정요구와 1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고,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57건의 시정요구와 16건의 부대의견을,

농촌진흥청에 대해서는 7건의 시정요구와 1건의 부대의견을,

산림청에 대해서는 44건의 시정요구와 3건의 부대의견을 채
택하기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에 대해서는

13건의 시정요구와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업진흥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은 연례적·반복적인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우리위원회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까지 보고하도록 하였음.

6. 심사결과

- 정부 원안대로 의결함.

7. 부대의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원 확대 등 방안을 강구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당근 등 품목의 생산성 회복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 직불제 및 경축순환 직불제 등 선택형 공익직불금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임업직불금이 농업직불금에 비해 손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5.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현장에서의 온열 질환 발생에 대응하여 무더위쉼터를 마련한다.
6.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요금체계 개편안 마련 시 농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7. 농림축산식품부는 향료·색소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기타주류가 아닌 탁주로 인정하도록 하는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책방향을 검토한다.
8.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쌀을 활용한 가공산업 활성화, 국산 쌀 고급화, 쌀 의무자조금 도입 노력, 전락작물 대폭 확대, 쌀 적정면적 재배, 친환경 쌀 재배 확대 등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9.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에 중소유통경로도 참여하여 물가 안정 및 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다.
10.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온라인 유통업체 미정산 사태 관련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11. 농림축산식품부는 먹거리 조달 비용 등을 고려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한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방식을 적절히 개선한다.
12. 폭염으로 인한 가축폐사가 심각한 상황에서 축사시설 개선이 필요함에도 관련 예산이 매년 감소 중이고 농가 자부담률이 높아 어려움이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자부담률 및 사업신청요건 완화 등 관련 대책을 검토한다.

13.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한우 할인 판매 확대 등 한우가격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한우의 수출 장려, 선제적 수급 방안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14. 농림축산식품부는 출하에서부터 도축단계까지 근출혈 문제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15.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 종식에 따른 업계 피해 지원에 필요한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16.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확산 관련 대책을 검토하여 보고한다.
17.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구제역백신 양산체제 확립을 위해 백신제조시설 구축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8.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들이 살인진드기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질병관리청과 협업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9.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양곡매입 방식이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명확히 해당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협경제지주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등 사후정산 관련 절차와 규모 등이 예산에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해양수산부 소관>

1.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대응과 어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편성된 예비비의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비비의 편성 및 집행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한다.
3. 해양수산부는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사업 관련하여 2024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향후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해양수산부는 국가어업지도선 건조사업의 잔여공사 재개 전까지 기성물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밀검사 등을 통해 기성물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잔여공정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해양수산부는 우리 조사선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 조사 활동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항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
6.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관련 사업신청 및 증빙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우체국 택배·섬 지역 소상공인을 사업지원대상에 포함하고 택배비(추가택배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사업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7. 해양수산부는 소형선박 수리조선소가 친환경 항만시설로 변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한다.
8. 해양수산부는 평택 신국제여객부두 야적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신여객터미널 뒤 유희부지에 추가 야적장 부지확보를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9. 해양수산부는 추후 평택 신국제여객터미널 위탁업체 선정 시 평택시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한다.
10. 해양수산부는 제주 특화 항만 구축 및 동북아 크루즈 모항으로의 발전을 위해 정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제주신항을 조속히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1. 해양수산부는 2023년 11월에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사업의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원활한 크루즈 유치를 위해 2단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12. 해양수산부는 양식등재해대책비 내역사업인 이상수온대응지원사업 집행 시, 현재 고수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육상 양식장에도 액화산소 공급기 등 장비가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13.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의 어획량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4. 해양수산부는 선박엔진 임시검사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검사받는 동안 조업도 못하므로, 어업인 편의와 안전한 조업
환경이 조화될 수 있도록 임시검사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15. 해양수산부는 동해안의 해역 특성을 반영하여 마을어업의 수
심한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6. 해양수산부는 전국 어촌계장에 대한 활동비 등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농촌진흥청 소관>

1. 사업별 성과지표 달성 미달사업이 전체의 15%에 해당하는데, 기제출한 미달 사유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4년 연속 목표를 미달성한 사업도 있으므로 성과지표를 철저히 관리한다.

<산림청 소관>

1. 산림청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예산의 집중편성을 통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소나무 재선충병에 저항성이 강한 소나무 품종 개발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도록 노력한다.
2. 산림청은 산불로 훼손된 산지를 산주 동의 없이 긴급하게 벌채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바, 긴급벌채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산림청은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산림헬기 외주정비 결산내역과 실제 집행내역 간에 불용헬기 6대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바, 향후 국회 제출 결산서에 오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해양경찰청 소관>

1. 해양경찰청은 해양조사 관련 자료를 국회에 성실히 제출한다.
2.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구조활동 시 민간 협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한다.
3. 해양경찰청은 무인헬기의 구매비용을 고려할 때 운용시간이 저조하므로 활용 확대 방안을 강구한다.
4. 해양경찰청은 응급상황 및 불법조업 단속에 대응하기 위하여 헬기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8. 시정요구사항

(1).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결과 : 총 186 건(결산·예비비 합계)

(단위: 건)

부 처 명	변 상	정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중 복)	합 계
농림축산식품부	-	-	-	7	58	-	65
해양수산부	-	-	5	16	36	-	57
농촌진흥청	-	-	-	1	6	-	7
산림청	-	-		10	34	-	44
해양경찰청	-	-			13	-	13
합계	0	0	5	34	147	-	186

(2). 시정요구사항(결산)

가. 농림축산식품부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공통	주의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2020년 기준 36억 8,330만원이었던 장애인 고용 부담 부담금 납부 총액이 2023년 기준 53억 3142만원까지 증가(+44.7%)하는 등 장애인 고용 의무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음 - 특히, 농협은 중앙회·지주회사·농협은행 등 모든 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약 200억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본부 및 소관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2	중증장애인 생산물 우선 구매비율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공통	주의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2023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농협중앙회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 구매비율(1%이상)을 준수하지 않았음 - 특히, 농협중앙회는 최근 5년간 단 한번도 1%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한 적이 없으며, 구매비율도 타 기관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실적: '19년(0.03%), '20년(0.03), '21년(0.07), '22년(0.14), '23년(0.30)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집행 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 구매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협중앙회 등 소관 기관들이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 구매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성인지 대상 사업 추가 발굴 및 적합성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공통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림축산식품부 성인지 대상 사업은 노동부담 경감, 영농교육, 창업지원 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성인지 대상 사업이 여성농업인들의 정책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성인지 결산서에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사업”과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 활성화 사업”이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동 사업을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들의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추가 발굴하고, 현행 성인지 대상 사업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는 한편, 대상사업 선정 시 사업평가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4	성인지 사업관리 및 예결산 내실화 필요	관련사업명	공통	주의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회계연도에 13개 성인지 대상 사업 중 4개 사업은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는데, 성과목표 미달성 4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성과목표 미달성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국회로 제출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서의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실집행부진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공통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 19개에서 3,217억 67백만원의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집행 소요 확인 및 철저한 분석으로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효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 및 측정 방식도 개선할 것		
6	공공시설 복구 공사의 신속한 착수 및 관리·감독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재해대책비(1033-302)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2023년 공공시설 복구비의 실집행률은 본예산 대비 4.6%, 지자체에 교부한 금액인 68억 6,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도 26.7%에 불과함 ○ 집중호우나 태풍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다음 해 6~8월 이전에 해당 시설이 복구되지 않을 경우 더 큰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시설의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국비 교부, 지방비 편성 등의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공시설 피해 복구공사의 착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피출연·피보조기관에서 공공시설 피해복구비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현재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21건의 공사도 2024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수요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1130-331)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의 실집행률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2023년도 실집행률은 46.9%에 불과함 ○ 최근 동 사업의 예산 편성 당시 계획 개소수와 실제 컨설팅 진행 개소수를 비교해 보면, 매년 실제 컨설팅을 진행한 개소수가 계획 개소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차이가 증가함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의 효과를 적극 홍보하거나 자부담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사업수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8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관리·감독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촌고용인력지원(1140-333)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의 지자체 예산 실집행률은 20.4%로, 10곳의 지자체 중 5곳은 예산을 전액 이월하였고, 전북 고창과 경남 거창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의 실집행률도 각각 0.5%, 4.3%, 23.7%에 불과하여 실집행 실적이 매우 부진함 ○ ’24년부터 추진중인 신규 10개소도 7월 현재 지자체 예산 집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님비현상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사업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기숙사 건립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사업다각화 사업 실행률 제고 및 연내 집행가능한 보조금 교부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2131-35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사업다각화 사업은 식량작물 생산과 연계한 선별·저장·가공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실행률 32.5%로 저조 - 주요 집행 부진 사유는 ① 건축공사 인허가 지연 ② 지방비 확보 지연 ③ 사업계획 변경 ④ 계약체결 지연 등으로 나타남 ○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하여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 교부하였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선정된 공동경영체에 대한 예산 전액을 교부하여 연례적 이월 발생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다각화 사업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할 것		
10	사업다각화 사업 예산의 내역변경 절차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2131-35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사업다각화 예산 81억 9,300만원 중 14억 9,900만원을 시설장비 지원 사업으로 내역 변경하여 시설장비 지원 사업 예산현액 132억 4,900만원 증액 - 내역변경 시 자체전용에 준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절차 혹은 국장의 전결 절차없이 내역변경(‘23.4.28.)을 집행하여 예산 집행 관련 지침 취지 위반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사업 예산 내역변경 시 관련 절차를 준수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스마트팜 조성사업 예산집행 비효율성 해소 등 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임대형 스마트팜(2220-38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2220-376)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의 경우, ‘22년 신규사업 4개소에 2년간 80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실행액은 87억 8,100만원(실행률 11%), ’23년 신규사업 3개소에 30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실행액은 8억 2700만원(실행률 2.8%)에 불과하고,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은 6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행액은 4,800만원(실행률 0.7%)에 불과하였음 - 스마트팜 사업의 집행부진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1.’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스마트팜 관련 사업의 집행부진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내역사업인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은 2023년 10개소를 조성하여 청년농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연내 완공한 곳은 2개소에 불과함. - 나머지 개소는 2024년 4월에야 모두 완료되었으나, 경남 창원 2개소의 경우 6월말 기준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 임대계약 지연으로 인해 실행실적도 45억원의 예산현액 중 46.8%에 해당하는 21억 800만원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비효율적 예산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실제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만 편성하여 한정된 농업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청년농이 선호하는 사업부지를 미리 확보하여 대상자 모집 및 임대계약 등 필요한 절차가 조기에 시행되도록 하는 등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시 지역간 형평성 고려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임대형 스마트팜(2220-383)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향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 선정 시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제주는 스마트팜 확산 및 대체의 시너지 효과가 큰 지역으로 효과성에 대한 고려 필요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임대형 스마트팜 특화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선정과정에서 평가 기준 등에 적절히 반영할 것		
13	온실가스 감축실적 정부구매 방식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사업내용 변경 방안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2240-312)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감축량 1톤당 1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꾸준한 감축량 증가에 따라 정부의 재정부담이 갈수록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사업이 지속되기 어려울 가능성 * 사업기간(’13~’23)내 탄소감축량 및 인센티브 지급액: 156,370tCO ₂ , 15억 6,849만원 - 최근 ESG 경영 실천 기업이 증가하면서 자발적 시장(’24. 1톤당 약 1.2만원)에서 탄소크레딧(감축실적) 수요가 증가하고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이므로 농업분야에서도 소규모 개별농가의 감축량을 규모화하고 거래체제 구축 필요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영농활동 실천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 대신, 감축실적을 인증해 탄소크레딧을 발급하고 기업에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실적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관리 강화와 성과목표 및 성과측정 방식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2240-401)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은 2023년에 36억 7,200만원의 국비를 보조하였으나 실집행액이 6억 6,800만원에 불과하고, 2억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목)에서 민간경상보조(320-01목)으로 전용하여 농어촌공사의 컨설팅사업에 사용함 - 총 8개 사업지 중 7개 사업지에서 해당지역 전력계통 여유용량 소진,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연 및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 성과지표가 사업의 추진 정도와 무관하게 단순히 당해 연도 예산을 반영한 ‘실증지원 개소 수’로 설정되어 있어, 사업이 침체되어 있음에도 성과지표를 100% 달성하고 있음 - 2022년도 및 2024년도 예산의 경우 농어촌공사의 컨설팅 사업비가 처음부터 민간경상보조(320-01목)로 편성되었음을 고려하면, 예산편성 과정상의 실수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의 기존 사업추진 방식 등을 재검토하고 사업 여건이 우수한 제주 지역 등에서의 사업을 고려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추진정도 및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 및 성과측정 방식을 개선하며, 민간경상보조 등 향후 예산편성에 실수가 없도록 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센터 조성 사업관리 주의 및 조속한 센터운영주체 결정 등 후속절차 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2240-41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594억원을 투입하여 전남 해남군에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액 21억 3,500만원 중 9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700만원을 이월함 - 사업기간(' 23~ ' 26) 첫 해부터 실시설계비 전액(11억 200만원)을 이월함 - 센터의 운영방안(①기존 공공기관에서 운영 vs ②별도의 공공기관 설립) 및 운영주체가 미결정 상태이고, 별도 공공기관 설립으로 추진한다면 근거 법률의 제개정도 필요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예산이 차년도로 이월되는 등 집행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 에 주의하고, 조속히 센터운영주체를 결정하여 후속절차를 추진할 것		
16	산업식품융합 프산업클러스 터조성 사업의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실행 실적 고려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산업식품융합프산업클러스터조성(경북 안동)(2250-386)	주의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산업식품융합프산업클러스터조성(경북 안동) 사업은 현행 법령에서 추진 가능한 햄프산업에 대 한 지원을 통해 국내 햄프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는 사업임 ○ 2023년도 국비 예산 12.5억을 편성한 등 사업의 실행행률이 2년간 0%에 머무르고 있어, 1년차 사업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서 동일 액수의 국비예산을 편성하는 등 시정조치가 이 뢰지지 않았음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업식품융합프산업클러스터조성 사업 등 실행행이 전무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적절한 조정과 환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곤충·양잠거 점 단지 조성 사업비 추산 등 집행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훈별회계 -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2271-303)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정확한 사업비 추산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농림 축산식품부는 사업비 추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선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경북) ○ 사업지연 방지를 위한 집행관리 필요(강원)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곤충·양잠거점단지 조성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시 사업비 추산 등에 대한 면밀한 선행 검토를 하고, 조성사업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18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 기업 분양률·준공 률 제고 및 연구시설 확보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훈별회계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2836-355)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 23년에는 분양기업수가 감소(126개→125개)하고, 분양면적도 1% 증가(72.7→73.7%)하는 데 그 치는 등 기업투자 유치가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준공율의 경우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나, ' 23년 기준 준공단계에 이른 기업은 78 개사이고, 분양면적 기준으로 46.2% 수준으로 나타남 ○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조성된 부지는 총 40,381㎡이나 ' 23년 기준 민간 연구시설 유치실적은 전무한 실정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의 분양률·입주율 제고 및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다각 적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내 연구시설부지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농업관측 사업 출연금 인건비의 연례적 이월 방지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업관측(3031-30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업관측 내역사업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출연한 인건비 집행실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도에 2,700만원으로 나타났던 인건비 이월액은 매년 증가하여 2021년도에 9,600만원, 2022년도에 4억 7,100만원, 2023년도에 5억 9,200만원에 이릅니다 ○ 미집행된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것은 기회비용 관점에서 다른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었던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사후정산 및 반납 의무가 없는 출연기관이 누적된 출연금을 정산 및 반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자수입을 확보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관측 사업 출연금 지급 시 마지막 분기(월)에 예상되는 집행 잔액만큼 출연금을 미배정하는 등 연례적인 인건비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20	농축산물 할인지원으로 인한 가격 영향 분석 등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3041-385)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2023년부터 물가안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소비수요 촉진으로 인한 수요 창출로 인해 고물가가 지속될 우려가 있음 ○ 2021년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효과분석에서는 증가된 수요로 인한 가격 인상 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2022년도 성과분석에서는 수요증가로 인한 가격영향 효과 분석을 미실시함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비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수요 증가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는 등 사업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시행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예산의 중소유통경로 집행 비중 제고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3041-385)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대형유통경로 사업비 집행 비중은 60.3%, 중소유통경로 사업비 집행 비중은 39.7%임 - 사업 예산 집행이 대형유통경로에 집중되는 경우,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지역농협, 친환경매장 등 중소유통경로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효과 유발 - 판매시점관리(POS)시스템이 없는 유통업체에 소규모로 납품하는 소농은 할인지원 사업에서 소외되는 문제 발생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추진 시 중소유통경로에 대한 사업비 집행 비중을 제고하고, 판매시점관리(POS)시스템이 없는 유통업체에 대한 할인지원 적용방안을 마련할 것		
22	조사를 통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의 효과성 파악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3741-338)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은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존재하고, 사업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고양이 구조 건수, 길고양이 관련 민원·언론보도 건수 등의 지표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임 * 길고양이 구조(마리): 14,292(‘21) → 19,944(‘22) → 25,115(‘23) * 길고양이 민원(건): 501(‘21) → 410(‘22) → 455(‘23) * 길고양이 관련 언론보도(건): 1,816(‘21) → 2,064(‘22) → 1,989(‘23)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의 개체 수 및 중성화된 개체 수 측정, 서식형태 및 주변환경 조사 등을 통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고 지역별 중성화 사업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공중방역수의 사 등 가축방역 인력 충원 확대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가축방역대응지원(3940-335)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최근 3년간 신규로 임용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에는 필요인원 150명 대비 103명이 충원되어 충원률이 68.7%에 불과한 상황임 - 지자체별 가축방역관 역시 적정인원은 1,953명이나 정원은 1,214명(적정인원 대비 62.2%)이고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인원도 1,130명(적정인원 대비 57.9%)에 불과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중방역수의사, 가축방역관 등 가축방역 인력의 필요인원 확보를 위하여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가축방역 인력의 적극적인 충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수립할 것		
24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 사업의 면밀한 예산 배정 및 충실한 사전 조사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촌용수관리(4038-31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업용수 수질 조사 및 개선 사업은 정기적인 수질조사 실시 및 수질조사 결과 수질개선이 필요한 농업용 호소에 대한 인공습지 조성, 침강지 설치 등 수질개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동 사업은 일부 지구의 기본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비를 편성하여 전액 불용하였으며, 지방비 100%로 추진해야 할 지구에 사업비를 배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부족으로 예산 불용이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수 수질 조사 및 개선 사업 추진 시 지구별 사업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수요 조사를 통해 재원 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5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사업 보조금 지침 준수 및 관리 강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4130-445)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 22년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내역사업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사업' 의 예산이 재이월되었고 '23년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내역사업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도입' 사업도 예산이 이월되었음 ○ 두 내역사업 모두 보조금 실집행이 부진한 상황에서 보조금을 1차 또는 2차에 걸쳐 전액 교부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사업을 수행할 때 재이월·보조금 분할 교부 등 보조금 관리 지침을 준수할 것		
26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의 사업수요 감소 및 실적 부진 관련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업농촌사회적가치확산지원(4135-394)	주의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다양한 로컬푸드를 활용한 실천모델 발굴과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지원 및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최근 5년 간 지원한 총 89개소 중 23개소만이 연내에 계획을 완료(25.8%)하고, 그 외에는 예산을 이월하여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 관련 예산 실집행률은 47.5%에 불과함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지원 관련 공모 선정 지연 및 적정 부지 선정의 혼선 등으로 사업이 지연됨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수요 감소 및 실적 부진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7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인센티브 확대 방안 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6240-302)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동물복지축산인증제는 인증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관리가 소홀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측면이 존재하는 상황임 - 동물복지축산인증에 따라 시설개선 및 사육밀도 감소 등으로 농장의 생산비용은 증가하지만, 경제적 이익이 높지 않아 사업 참여가 저조함 - 점검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를 받은 농가가 없음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28	LMO종자 불법수입 및 유통방지 대책의 신속한 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6432-301)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LMO 종자 불법 수입 및 유통방지 대책」('23.6)이 발표된 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으나, 2024년 7월 현재까지 동 대책의 추진*이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유사한 사례가 언제든지 재발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 「식물방역법」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개정 미완료, 종자원 보관 종자(38개 품목) 전수 검사, 국립종자원의 조직과 인력 확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등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법률의 개정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완료하여 LMO 종자로 인한 농가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9	과수 작물별 공급 불균형 해소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과수무병묘목생산공급지원(6432-305)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5대 과수 작물별로 무병묘목 공급 실적을 살펴보면, 사과·배·감귤의 무병묘 공급률은 각각 12.3%, 11.7%, 21.9%였던 반면, 포도는 2022년까지 무병묘목 공급 실적이 없다가 2023년에서야 7.1%의 공급률을 보였으며, 복숭아는 1주의 무병묘목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수 작물별로 무병묘목 공급 실적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무병묘목이 과수 작물별로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30	영농정착지원 사업 예산의 실집행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1120-436)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전체 사업 예산 550억원 중 525억원에 해당하는 ‘영농정착지원’ 예산의 실집행률이 89.7%에 불과함 ○ 시·도에 교부되는 선발운영비 역시 실집행률이 69.1%로 저조함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는 등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1	반복되는 집행부진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3740-31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반려동물인프라구축 사업은 연례적 실집행 부진 사업으로, 지난 3년간 실집행률이 35% 미만임 - 집행부진 주요 원인은 지역주민 반대, 부지 미확보, 지방비 미매칭 등 사업수행여건 미흡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자체 사업계획에 대한 집행 가능성 검토 및 사업관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매년 교부액이 소진되지 못하여 누적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별 사업별로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수행실적이 부진하거나 제반여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고, 주민 여론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교부기준을 강화하며,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반복되는 집행 부진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2	양곡매입 방식 관련 법적 근거 명확화 및 농협경제지주 채무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양곡관리특별회계 - 정부양곡매입비(2131-36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양곡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는 자체 보유 또는 용자를 통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시장격리곡을 매입하고, 판매대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여야 함 ○ 동 법은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식품부장관은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양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매입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용자’ 할 수 있다고 규정 ※ 「양곡관리법」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 ○ 그러나 현재 쌀 시장격리는 농협경제지주가 자체 자금 또는 차입을 통해 시장격리미곡을 우선 매입하고, 농식품부가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외상거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국가재정법」 제25조에서 ‘외상거래 방식’을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 「국가재정법」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①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회의 의결 없이 시장격리를 시행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25조 위반 사항으로 볼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매입 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행기관인 농협경제지주의 자본부담이나 채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3	양곡 소비 촉진행사 추진방식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양곡관리특별회계 - 식량작물소비기반구축(2131-369)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소비기반구축 내역사업을 통해 집밥 소비 활성화를 위한 유통기업 협력 소비촉진 행사와 국산 쌀·밀·콩 제품 할인지원 행사를 추진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 중 소비자로 하여금 할인된 가격에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각 유통경로에 예산을 지원하는 유사 사업이 존재함 - 동 사업 참여 유통기업이 대형유통기업으로 한정되어 상대적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 소비 촉진행사 추진 시 사업의 중복성 및 참여대상 기업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방식을 개선할 것		
34	쌀가공제품 개발·출시의 기한 내 완료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양곡관리특별회계 - 쌀가루 산업화 지원(2131-37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쌀가루 제품개발지원 사업은 쌀가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쌀가루 사용을 희망하는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밀가루 대체 프리미엄 제품 등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2023년 10월 말까지 제품개발 및 내부 소비자 평가 완료를 조건으로 15개 쌀가공업체를 지원하였으나, 기한 내 제품개발 및 출시를 완료한 업체는 7개, 연내 출시 완료한 업체는 10개에 그침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가루 제품개발 지원 사업 추진 시 쌀가공제품의 개발·출시가 정해진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5	밀수 농산물 매각대금의 철저한 관리 및 몰수 농산물의 보관·폐기처 분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몰수금 및 추정금(56-562)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도에 몰수금 및 추정금 2,300만원 수입을 계획했으나 징수결정과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음 - 2023년 8월 발생한 밀수농산물 매각대금을 당해연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수입조치를 하지 않음 ○ 인수하지 않은 밀수 농산물의 시장 유입도 차단하지 못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관으로부터 인수된 밀수 농산물 매각대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세관이 인수 요청한 몰수 농산물의 시장 유통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인수 후 보관 및 폐기처분 여부를 검토할 것		
36	실수요자 배정방식을 통한 농산물 수입 시 농업인에게 미치는 영향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법정부담금(59-593)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산물 수입이익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법정부담금 목으로 수납처리됨 ○ 농산물 수입이익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품목을 기준으로 수입이익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품목 기준에 더하여 수입권의 배분방식에 따라 수입이익금이 면제되고 있음(법령상 근거 미흡)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WTO, TRQ 물량의 일부 품목에 대해 배분하는 실수요자 배정방식이 농업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7	식품외식종합 자금 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및 신규대출 실적 증진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2815-345)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식품가공원료매입(운영자금), 외식업체육성(운영자금)에 대해서는 대출액 대비 125%의 국내산 농산물 구매 의무가 부여되지만 농식품시설현대화(시설자금), 외식업체육성(시설자금) 및 농공상 융합형중소기업(시설,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구매 의무가 부여되지 않음 ○ 각 내역사업의 대환대출 비중이 높고, 신규대출의 비중이 낮아 신규 수혜자의 유입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외식종합자금 내역사업 중 ‘식품시설현대화(시설자금), 외식업체육성(시설자금) 및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시설, 운영자금)’의 경우에도 국산 농산물 구매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식품외식종합자금 각 내역사업별 신규대출 실적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8	저장품매입비 예산을 통한 납품단가 지원 지양 등 필요	관련사업명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비축지원(3031-323)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비축지원사업은 정부가 국내산 농산물을 수매 또는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 비축한 후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는 사업으로 저장품매입비(430-02목)로 편성됨 ○ 비축지원 사업 예산을 활용해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되지 않은 납품단가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함 - 납품단가 지원은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업체에 금전 지원을 통해 공급단가를 낮추는 방식임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납품단가 지원사업 추진 시 저장품매입비 예산을 통한 집행을 지양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별도로 반영하여 국회 심의를 거친 후 수행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9	납품단가 지원 사업의 대형유통기업 편중 해소 필요	관련사업명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비축지원(3031-323)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비축지원 사업을 통해 납품단가 지원 사업을 추진 - 납품단가 지원 사업은 작황 부진 등으로 인한 공급 부족 및 수요 증가에 따른 소매가격 부담 완화 차원에서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의 유통업체에게 품목당 납품단가의 일부를 지원하여 납품가격을 낮추는 방식임 ○ 납품단가 지원 대상은 농협,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의 대형유통기업에 대한 납품으로만 국한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납품단가 지원 사업 대상을 대형유통기업에 대한 납품업체로 편중하여 집행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할 것		
40	채소가격안정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농협 분담률 인하 등 필요	관련사업명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3031-326)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2023회계연도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에서 불용액 발생, 실행행률 미흡 ○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중 하나는 일선 지역농협 분담률이 높기 때문임 - 현재 농협 분담금 20% 중 10%는 농협경제지주, 10%는 지역농협이 분담 - 사업물량 확대 시 지역농협 재원 부담이 증가하여, 영세한 지역농협은 사업참여 및 확대를 기피하는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수 조합 인센티브 제도 도입, 평가를 통한 지역농협 분담률 인하 등을 위해 노력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1	법률상 이수의무 없는 교육 관련 비용 자부담 문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농식품유통교육훈련(3033-345)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동 사업을 통하여 총 53개의 과정을 개설하고 총 5,91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3개 과정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분류되어 98.5%에서 100%의 이수율을 기록함 ○ 일부 농산물 유통종사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근거 없이 동법 시행규칙에서 의무교육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교육 소요비용의 일부를 자부담(2023년 20%, 2024년 50%)하여 교육을 수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유통종사자가 법률상 이수의무가 없는 교육에 대한 비용을 자부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불필요한 교육 축소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2	농산물 온라인도매시 장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3033-36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온라인 중심의 상물 분리 거래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도매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국 단위 온라인도매시장 신규 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계획액 48억 6,200만원을 전액 집행 ○ 농림축산식품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을 통하여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운영 중인데, 동 지정기간은 내년도 10월 3일까지로 한시적용에 따라 법률 미제정 시 사업의 지속성 담보 불가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의 지정기간 내에 관련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3	농지보전부담 금 미수납액 적극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농지관리기금 - 법정부담금(59-593)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지보전부담금의 연체채권 규모는 296억 1,300만원에 달하며, 5년 이상 연체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53.6%에 달함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와 함께 농지보전부담금 미수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동시에 장기압류 중인 미납자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하는 등 미수납액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		
44	농업스타트업 단지조성사업 의 청년농업인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지관리기금 - 맞춤형농지지원(융자)(1160-35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은 청년농 14명 모집 중 13명이 선발되었으나, 스타트업단지 조성 완료(‘24.2) 후 계약 체결 시점에 청년농업인 개인 사정으로 5명이 사업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8명만이 계약 체결을 완료(‘24.4)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회계연도에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의 부지 조성 계획 면적이 6배 이상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청년농업인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5	임차임대 사업의 적정 규모 계획액 편성 등 필요	관련사업명	농지관리기금 - 맞춤형농지지원(융자)(1160-35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임차임대사업’의 최근 5년간 실집행규모를 보면, 21년부터 23년까지는 당초 계획액 대비 50% 미만의 실집행률을 기록하였고, 2023년의 경우 538ha를 계획하였으나 253ha에 그침 ○ 동 사업은 당초 계획액 대비 실집행액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당초 계획액을 ‘22년과 ‘23년 2년 연속 수정하여 감액함으로써 국회의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는 당초 계획액의 규모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음을 시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계획액을 ‘24년 4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2.5%나 대폭 증액 편성하여 집행함		
		시정요구사항	○ 임차임대사업의 집행 규모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의 계획액을 편성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계획액 과다 편성 이후 집행단계에서 과도한 수정을 반복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		
46	농지연금 수시인출형 사업 재원 확보 등 필요	관련사업명	농지관리기금 - 농지연금(융자)(4130-41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지연금 중 수시인출형 연금은 사업재원 부족을 이유로 가입자의 필요자금 인출이 장기간 제한된 바 있고, 동 상품의 신규가입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제한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러한 조치는 수시인출형 연금 가입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법령이 정한 농지연금 상품의 선택권을 근거 없이 제약하는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상품에 대한 높은 수요에 걸맞는 사업 재원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인출금 지급 기한 설정과 예산 범위 내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7	농지조사원의 업무환경 개선 및 불용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농지관리기금 - 농지이용관리지원(4130-412)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은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실집행률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이는 현장조사 농업인의 반발, 조사원의 업무숙지 미흡 등으로 인한 조사원의 중도 퇴사와 공고·계약 등 공식 채용 절차를 재추진하는 일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고 있어 잔여기간에 대한 즉각적인 신규 채용이 어렵기 때문임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조사원의 업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고 사업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48	친환경농업직 불금 단가 상향 등 지원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공익기능증진직불(1071-302)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최근 5년간 친환경 인증면적이 81,717ha에서 69,412ha(△15%)로 친환경 인증농가 수가 58,055호에서 49,520호(△17.2%)로 감소하는 등 친환경농업 규모가 지속적 감소 추세에 있는바, 친환경 농업직불금 단가 현실화 등 친환경 농업인들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직불금의 지급상한(5ha)을 타 직불금 수준(30ha~50ha)으로 상향하고, 유기지속 직불금의 단가를 상향하는 한편, 친환경인증 쌀 생산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 단가 현실화, 친환경농업 특화 재해보험 검토 및 세제 지원 등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9	친환경 농업인증 권리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 필요	관련사업명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공익기능증진직불(1071-302)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친환경농어업법」은 친환경농산물이 친환경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친환경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세부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련 사항 중 친환경농업인들의 권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0	공익직불 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공익기능증진직불(1071-302)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2020년 5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같은 법 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기본계획이 아직까지 수립되어 있지 아니함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 기 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직접지불제도 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또한, 공익직불제는 시행 5년 차로 농림부는 ' 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 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불용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2023년 공익직불금 예산 약 2조 7천억원 중 불용액이 약 2,200억원(8%)에 달함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는 한편, 공익직불금 예산의 집행률 제고 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1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항목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공익기능증진직불(1071-302)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17가지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하고, 미이행시 직불금 감액조치를 하고 있는데, 준수사항이 과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음 - 실제 4만5,000건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100억원이 지급되지 않았음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항목을 개선할 것		
52	선택직불제 확대 및 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공익기능증진직불(1071-302)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선택형 공익직불 예산액은 2020년 805억원에서 2023년 1,512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같은 기간 동안의 실집행률은 98.9%에서 86.6%로 감소하고, 불용률도 0.6%에서 8.4%로 증가함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선택직불 예산의 증액과 신규 직불제 도입을 통해 선택직불제를 확대하고, 이월액 및 불용액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3	전략작물직불 단가인상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공익기능증진직불(1071-302)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전략작물직불 사업은 밀의 직불금 단가를 기존 논활용직불 사업과 동일한 50만원/ha로 설정하여, 추가 재배 유인이 낮고, 실제 재배 실적도 목표 대비 74%에 그침 ○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밀·콩 등 전략작물 재배를 늘리는 데만 집중할 경우, 전략작물의 소비 촉진과 산업화, 계약재배자금 등의 사업이 확장되지 않으면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우려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품목별 직불금 단가 인상과 소비 촉진 전략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식량자급률 증진과 양곡 수급관리 목표를 달성할 것		
54	FTA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피해보전직불(1072-392)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최근 6년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집행률은 2020년을 제외하고 매우 저조한데, 이는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요건이 까다로워 발동되기 어렵기 때문임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FTA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5	FTA관련 교육·홍보 예산의 구분 운영 및 교육비 비율 상향 필요	관련사업명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운영(1072-395)	주의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FTA 교육홍보비로 3년간 총 83억이 집행되었는데 교육사업은 19억이 지급되었고 홍보사업은 지급 단가의 가이드라인 없이 특정 언론사 16억을 포함하여 64억이 지급되는 등 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언론사 홍보비가 지출됨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언론 홍보비 과다 지급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비와 홍보비를 구분하여 운영 하되 교육비 비율을 상향할 것		
56	고추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사업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원예시설현대화(3034-35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해 고추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자급기반을 확보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예산 2,970백만원 중 1,612백만원을 집행하고 508백만원을 이월 처리하고 8억 5,000 만원을 불용 처리(28.6%)하여 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의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7	축사시설현대 화 사업 관련 실제수요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축사시설현대화(보조·융자)(3760-346·332)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젓소 육성우 전문목장 지원사업은 2023년 지자체 사전 수요조사 없이 예산을 신규 편성(8억원)하여 추진되었으나, 두차례의 공모에도 불구하고 응모하는 지자체가 없었음. 이는 사업이 실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계획되었던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신규사업 편성 시 지자체 의견 조회 등의 절차를 통한 실제 현장 수요를 파악하는 한편, 사업방식 결정 시 실제 수요기관의 의견을 고려함으로써 예산 불용에 따른 재정 효율성 저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58	축사시설현대 화 사업 관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철회 필요	관련사업명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축사시설현대화(보조·융자)(3760-346·332)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 468억 100만원을 지자체로부터 반납받아야 했으나, 62.8%는 반납기한이 지나서 반납되었고, 1.3%는 2024년 7월말까지도 반납되지 않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위반한 상태가 지속됨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보조금 집행잔액의 미반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현재 미반납된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을 조속히 완료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9	축산발전기금 보조금 정산관리 철저	관련사업명	축산발전기금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발전기금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연례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 ○ 일부 지자체에서는 미반납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의 보조금 관리 및 감독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발전기금 중 일부 사업에서 연례적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향후 보조금 정산관리를 철저히 할 것		
60	계란공판장 출하촉진(용자)) 사업 예산편성 방향 정립 및 사업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축산발전기금 - 축산물수급관리(용자)(3731-307)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계란공판장 출하촉진 사업의 재원과 사업추진 방식이 정립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실적도 저조 - 재원 및 사업방식이 최근 3년간 뚜렷한 방향성을 정립하지 못하고 혼선을 보이고 있음 - ' 20년부터 ' 22년까지 200억원의 계획액 중 집행실적이 전무하고, 연간 계란 출하량 대비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계란 출하량 비중이 ' 22년 3.2%에서 ' 23년 0.9%로 하락함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공판장 출하촉진 사업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사업 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1	말산업육성지 원 사업 관련 보조금 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축산발전기금 - 말산업육성지원(3733-315)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림축산식품부가 연례적으로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말산업육성지원사 업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상당한 불용액('21: 5억 7,500만원, ' 22: 2억 7,300만원, '23: 1억 6,200만원) 및 이월액('21: 7억 7,600만원, ' 22: 9억 1,000만원, '23: 7억 5,400만원)이 지속적 으로 발생함. 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 반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보조금 관련 규정에 반하는 부적절한 보조금 교부로 인하여 예산이 이 월 또는 불용되는 등 동 사업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것		
62	연도 중 예산 조정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부적절	관련사업명	축산발전기금 - 말산업육성지원(3733-315)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한국마사회는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사업인 ‘치유승마 도입 및 활성화 실증 연구’, ‘말복지 사각지대 실태조사 및 말복지 제고 실증 연구’를 연도 중 신규 반영하여 추진 - ‘퇴역경주마 복지 관련 문제’는 2019년에 제기되어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쟁점화되었다 는 점에서 본예산 편성 시 준비가 가능하였음을 고려할 때, 사전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 하였을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본 예산 편성 당시 반영하지 않고 연도 중 예산 조정을 통해 추진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3	말산업육성지 원 사업 관련 「국가재정법 」 등 예산 이월원칙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축산발전기금 - 말산업육성지원(3733-315)	주의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한국마사회가 추진한 ‘치유승마 도입 및 활성화 실증 연구’ 및 ‘말복지 사각지대 실태조사 및 말복지 제고 실증 연구’의 경우 입찰 공고만 한 상태(‘23.12)에서 계약 체결(‘24.2) 등 지출원인행위 없이 예산을 이월하였는바, 「국가재정법」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의 이월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 집행 시 지출원인행위 없이 예산을 이월하지 않는 등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및 「국가재정법」상의 이월 원칙을 준수할 것		
64	공동자원화시 설 사업 관련 보조금 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축산발전기금 - 가축분뇨처리지원(3735-329, 33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실적집행실적이 최근 3년 평균 집행률이 53.3% 연례적으로 부진 ○ 동 사업 대상 지자체 모두 2023년도 예산집행이 전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교부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자 선정 시 지자체가 주민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 관련 사전절차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보조금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적절한 보조금 교부로 인하여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되는 등 사업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보조금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 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5	드론을 활용한 가축방역사업 의 체계적 운영 필요	관련사업명	축산발전기금 - 가축위생방역지원(3941-342)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지적사항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드론을 활용하여 농장 주변지역 소독, 울타리 방역실태 확인, 야생멧돼지 포획 등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인력, 장비 및 시스템 측면에서 미흡한 사항이 있음 - 드론 운용 전담 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는데, 짧은 계약기간으로 전문성·노하우 축적이 어렵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발생함 - 총 27대의 드론 장비 중 과반수(14대)가 임차로 운용되며, 보유 장비(13대) 중 예찰용 드론(9대)은 성능 및 보안성 문제로 사용이 어려움 - 기존 사업 관리시스템 활용에 따라 드론 방역 활동 기록의 체계적 관리가 어렵고, 외부 클라우드 서버 사용으로 보안성 문제 발생 우려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드론 방역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적 인력·장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업무절차별로 필요한 방역이력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할 것		

나. 해양수산부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미회수채권 회수를 제고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공통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세입관련 변상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2023년 일반회계, 교특회계 각각 1.3%, 26.0% 이고, 5개년 평균도 각각 9.5%, 30.7%로 수납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추징활동 강화, 채권 보전 조치 적기 이행 등 변상금 미회수채권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2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및 보조사업의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공통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지자체 보조사업이 사업자 선정 후 각종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지연, 매칭 지방비 확보 지연, 주민 민원 등 다양한 사유로 집행이 부진함 - 지자체의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총 48개 사업(자본보조 39개, 경상보조 9개)이 집행부진(실집행률 80% 미만)으로 확인됨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실제 집행이 가능한 시기에 적정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해양정원 조성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해양정원 조성(1031-307)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가로림만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 당시 유사·중복 사업이 많았고, 이에 대한 통폐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됨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사업계획 변경현황] <table> <tr> <th>시 기</th> <th>예비타당성조사 중 변경('20.9)</th> <th>타당성 재조사 추진시 변경('22.5)</th> <th>최종안('23.6)</th> </tr> <tr> <td>총사업비</td> <td>2,448억원 (국비 1,555/지방비 893)</td> <td>1,577억원 (국비 1,024/지방비 553)</td> <td>1,236억원 (국비 834/지방비 402)</td> </tr> <tr> <td>사업기간</td> <td>'21 ~ '25년</td> <td>'22 ~ '26년</td> <td>'23 ~ '27년</td> </tr> </table> - ‘해양정원 조성사업’은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에 해양생태관광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상생형 발전 선도모델을 구축하려는 사업임						시 기	예비타당성조사 중 변경('20.9)	타당성 재조사 추진시 변경('22.5)	최종안('23.6)	총사업비	2,448억원 (국비 1,555/지방비 893)	1,577억원 (국비 1,024/지방비 553)	1,236억원 (국비 834/지방비 402)	사업기간	'21 ~ '25년	'22 ~ '26년	'23 ~ '27년
		시 기	예비타당성조사 중 변경('20.9)	타당성 재조사 추진시 변경('22.5)	최종안('23.6)															
		총사업비	2,448억원 (국비 1,555/지방비 893)	1,577억원 (국비 1,024/지방비 553)	1,236억원 (국비 834/지방비 402)															
사업기간	'21 ~ '25년	'22 ~ '26년	'23 ~ '27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향후 추진하는 해양정원 조성사업에서는 성격·기능이 유사한 사업을 중복하여 포함하지 않고, 집행여건을 미리 검토하는 등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사업여건에 대한 사전 확인 강화 및 사후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오염퇴적물 정화·복원(1033-305)	주의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준설토투기장의 확보 여부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정화사업지로 선정한 이후 준설토투기장 미 확보로 사업착수가 지연됨 ○ 정화·복원 사업 완료 이후의 해수 수질 검사에 따르면 일부 해역의 경우 오염도가 개선되지 않음(통영항의 경우 부영양화물질 정화지수가 사업 전보다 상승) -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사업’은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수거·처리, 사후관리 등을 통해 해양오염퇴적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화를 도모하는 것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정화·복원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준설토투기장 확보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 하고, 사업 실시 후 오염도가 개선되지 않은 해역에 대해 구체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사업구간 선정방식 검토 및 등급평가방식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연안정비(1034-302)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사업의 경우 재정 여건 상 시급한 구역에 한정하여 사업구역이 선정됨에 따라 침식등급을 개선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구간을 설정하지 못함 ○ 현행 연안침식 등급평가는 모든 연안에 대해 동일한 평가지표 및 배점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침식유형에 따른 정확한 사업효과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함 - 2023년도 연안침식 등급평가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내 14개소 중 A등급(1개)과 B등급(6개소)은 7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7개소 중 C등급 4개소, D등급 3개소임. D등급(심각단계)은 전국에 19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3개소가 제주도임 - 국가(지방해양수산청)가 시행하는 사업은 ‘연안정비(일반회계)’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해양 및 수자원 관리(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내역사업으로 이원화됨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사업구간 선정방식의 검토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해양수산부는 평가방식에 있어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연안침식 평가로 바꾸는 등 등급평가방식을 개선할 것 ○ 해양수산부는 지난 5년간 연안침식 등급평가 결과를 제출하고, 제주지역 연안침식 대책을 마련하며 내년도 예산배정을 확대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해양문화시설 연례적 이월에 대한 시정과 결산잉여금 관리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2031-308)				시정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출연금 실행단계에서 발생하는 연례적 이월 및 결산잉여금 처리 관련 규정 시정 필요 - 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해양과학관의 운영사업의 실행단계에서 출연금 연례적 이월되고 있음 [연도별 이월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 <th>구분</th> <th>‘21년</th> <th>‘22년</th> <th>‘23년</th> </tr> <tr> <td>해양박물관</td> <td>1,906(18.4%)</td> <td>1,659(15.3%)</td> <td>2,233(21.0%)</td> </tr> <tr> <td>해양과학관</td> <td>1,835(18.6%)</td> <td>2,517(23.5%)</td> <td>1,954(17.7%)</td> </tr> </table> - 사업출연금의 집행잔액 처리와 관련하여 결산잉여금 포함 항목(집행잔액 등)에 대한 통일적 규정이 없으므로 투명한 관리가 어려움 -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은 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해양과학관의 운영비·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것임						구분	‘21년	‘22년	‘23년	해양박물관	1,906(18.4%)	1,659(15.3%)	2,233(21.0%)	해양과학관	1,835(18.6%)	2,517(23.5%)	1,954(17.7%)
		구분	‘21년	‘22년	‘23년															
해양박물관	1,906(18.4%)	1,659(15.3%)	2,233(21.0%)																	
해양과학관	1,835(18.6%)	2,517(23.5%)	1,954(17.7%)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연례적인 이월문제를 시정하고, 결산잉여금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지연관련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2042-325)	주의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선박건조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여러 차례 무응찰로 유찰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는 바, 이 처럼 건조사업 지연 시 건조비용이 인상되고, 기존 아라온호의 부담이 가중되며, 극지 연구 일수와 연구범위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R&D)은 기존 아라온호 대비 강화된 쇄빙능력 및 향상된 환경· 안전 기준을 적용한 친환경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건조하려는 것임(총사업비 : 2,765억원, 사 업기간 : 2022~2029)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8	중국어선 불법어구 철거사업 예산확대 및 대책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어업협정이행(3132-300)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중국어선 불법어구 철거사업은 불법어업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예산이 부족하고, ○ 2022년과 2023년의 경우 예산액이 동일함에도 철거실적이 각각 43통, 1.5통으로 사업 실적의 연도별 편차가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관련 예산의 확대와 안정적인 사업 실적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국가어업지도 선 건조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국고손실 및 임무수행 차질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어업지도관리(3132-303)	시정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어업지도선 건조사업’ 으로 추진되는 900톤급 국가어업지도선건조사업은 계약 업체와 경쟁업체 간 법적분쟁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허위 입찰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후 잔여공정을 마무리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후속계약이 유찰되어 아직까지 건조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음 -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은 국내외 불법어업 어선 지도·단속 업무수행에 필요한 국가어업지도선을 대체 및 신규(3척) 건조하는 사업임 ○ 어업지도선의 준공시기 지연(2024. 1. 31. 준공예정 → 최소 2025. 12월 이후)으로 인해 교체 대상인 기존 어업지도선 3척을 계속 운영할 경우 노후화로 인한 안전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 임무수행에 공백이 초래될 소지가 있음 ○ 건조가 중단된 어업지도선 3척을 폐기할 경우 매몰비용(321억원)이 발생하고, 건조를 재개할 경우 물가상승분(100억원) 및 기성물 수리비용(22억원) 등 122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국가어업지도선 건조사업에서 계약과정에 관한 분쟁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어업지도선의 임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원거리해역 대응 시범사업의 사전준비 미흡으로 인한 예산불용사태 재발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어업지도관리(3132-303)	주의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원거리해역 대응 시범사업’은 2022년~2023년 2년간 추진 예정이었으나, 2023년 시범사업 활동에 필요한 민간선박이 미 확보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시범사업을 조기 종료함 ○ 이로 인하여 당초 설정한 시범사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편성된 예산 14억원을 전액 불용하였음 - 원거리해역 대응 시범사업은 대형어업지도선 도입 전 접경수역 등 원거리해역에서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및 어업분쟁 방지효과를 사전 검증하기 위해 민간어선을 활용하려는 것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민간선박의 확보여부 확인 등 사전준비 미흡으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1	어업감독공무원 제복의 연내 미납품 문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3132-305)	주의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해양수산부는 내역사업인 ‘어업지도선 수리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지급할 피복 제작·구매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했으나, 2023년 말까지 계약물량의 33%만 납품되었고, 2024년 3월 업체의 계약포기로 잔여물량이 납품되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계약 체결 시 업체의 계약이행 능력 등을 면밀히 검증하여 납품지연 및 계약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생분해어구 보급확대 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친환경 어구보급(3140-303)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생분해어구의 낮은 내구성으로 인한 잦은 교체주기, 기존 나일론 어구 대비 비싼 가격으로 인해 생분해어구의 보급률이 낮은 상황(2023년 기준 14.6%)임 - 친환경어구 보급사업은 어업폐기물로 인한 해양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바닷속에서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어구를 보급하는 사업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생분해어구의 생산단가 인하, 어업인의 선호도가 높은 자망 어종 중심의 어구 보급 등 생분해어구 보급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13	어선건조진흥 단지 (고흥) 사업의 국가사업 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3150-343)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어선건조진흥단지 구축은 재정자립도 등 고려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기획재정부는 당초 국가 직접수행사업으로 계획된 동 사업을 2025년부터 지자체보조사업(지방비30%)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당초 사업계획대로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사업기간 내 완료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5067-301)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목포·마산·광양 및 평택·통영 지역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은 「항만법 시행 규칙」을 미리 정비하지 않는 등 사전준비 미흡으로 당초 계획한 사업기간(2년) 내 완료하지 못함 -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제협약에 따라 무역항 내 의무설치되어 운영중인 선박 폐유수용시설(「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상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관련 법령 정비 등 사업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		
15	해양수산연수원 경영실적 부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해양수산연수원 지원(6132-302)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연도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2018년 종합평가등급이 C등급, 2019년 D등급, 2020년 C등급, 2021년과 2022년 모두 종합평가등급 D등급을 받아 평가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함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연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평가등급이 부진하였으므로,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경영혁신 방안을 수립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선박 확보계획에 대한 점검절차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6134-300)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동 내역사업의 운항실적이 낮고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사업대상 선정시 먼저 선박 및 인력 확보 여부를 검토하고, 만약 당장 활용 가능한 선박이 없는 경우 구체적인 확보 계획 및 일정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양식에 구체적인 선박 확보 계획이 누락되어 있음 - 내역사업인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 도선 등이 운항하지 않는 소외도서의 주민 및 방문객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 선정시 선박 확보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확인 및 점검절차를 보다 강화할 것		
17	국가보조항로 지정 전 사전계획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국고여객선건조(6143-302)	주의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접안시설을 고려하지 않고 부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 지연이 발생하였고, 설계변경으로 인해 국고여객선 준공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됨 - 대천-외연 항로 여객선의 접안시설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하여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함에 따라 ‘25년에나 해당 항로의 선박(선령 23년) 대체 가능 - 국고여객선 건조 사업은 국가보조항로 운항 여객선 중 노후선 또는 항로여건에 부적합한 선박을 대체 건조 후 항로에 투입하여 도서지역의 안정적 해상교통수단 확보 및 선박·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향후 신규 국가보조항로 지정 전에 충분한 현장조사 및 의견 수렴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고, 사전에 폐업예상항로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8	유류세 관련 세출예산안 편성 시 부처간 협의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연안화물선 유류비보조(6159-300)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기재부는 세입예산안 편성시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조치가 지속될 것을 전제로 편성하였으나, 해양수산부는 유류세 인하기간 종료를 전제로 편성하여 집행율이 39.4%로, 188억이 불용됨 -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사업은 연안화물선에 대한 경유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하여 내항화물운송업계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것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향후 세입예산안과 연계되는 세출예산안 편성 시 부처간 협의를 강화하여 예산이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9	전기차 화재 대응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6332-302)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선사마다 전기차 선적 관련 적용 기준에 차이가 있어 승객의 혼란이 있고, 초동조치를 위한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가 부족함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전기차 화재를 대비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고, 선박 내에 질식소화포, 전기차 화재탐지기, 화재진압 선원 보호복, 상방향 물분사장치 등을 조속히 보급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스마트 해양안전교통망 구축·운영(6332-308)	주의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e-Navigation 선박단말기 보급 및 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 예산이 통신망 구축 지연으로 과다하게 반복 이월(실집행률 ‘20년 9.6%, ‘21년 41%, ‘22년 52.9%, ‘23년 49.7%)되었고, 당해연도 예산의 집행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연례적으로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는 바,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미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위 배됨 - ‘스마트 해양안전교통망 구축·운영 사업’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센터 운영, e-Navigation 선박단말기 보급 및 관리 등을 통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을 준수할 것		
21	부산공동어시 장 현대화사업의 연내 착공을 위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3040-310)	주의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이해관계자간 이견 등으로 차질을 빚어 준공시기가 최초계획 대비 8년 이상 지연(2019년→2026년 이후 준공예정)되었고, 이에 따라 총사업비도 증가(약 1,729억원→2,284억원)하였음 -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1973년 건립되어 노후도가 심한 부산공동어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형태는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임(국비 70%)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총사업비 협의, 행정절차 이행 등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이 연내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2	해파리 피해 어선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등 확보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수산물위생관리(3041-303)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노무라 입깃 해파리로 인한 어선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노무라 입깃 해파리 구제사업과 관련된 예산(매년 16억원)은 편성되어 있으나, 피해어선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없는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해파리 피해어선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조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3	양어사료 전문 생산시설 사업관리 철저 및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지원(3140-300)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양식배합사료에 대한 어가의 신뢰부족 등 사유로 배합사료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여 해양수산부의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제도 시행이 유예되고 있고, 보조사업자(수협)가 수요부족 등으로 배합사료 생산시설 구축사업을 포기하는 등 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성장효율이 높은 배합사료를 개발하고, 배합사료 수요를 확보하는 등 배합사료 사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사업수요 및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사업 추진여부 결정 필요 등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양식수산물 전략품목 육성(3140-350)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재해대응 중층 침설식 가두리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신청이 없어 예산이 전액 불용되고, 사업이 조기종료되었고, ○ 같은 내역사업으로 추진되는 질병예방연구센터 구축사업은 사업초기 부지 선정 및 설계용역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2년(2024년→2026년)연장될 예정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재해대응 중층 침설식 가두리 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및 재해 대응에 대한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본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질병 예방연구센터가 변경된 준공시점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25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어가 신청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수산물 자원순환 기반구축(3140-355)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자원순환인프라구축 사업에 편성된 보조금 예산(15억 4,500만원) 중 6억 3,400만 원이 집행되어 실효행률이 41%로 저조함 - 자원순환인프라구축 사업은 전국 박신장을 대상으로 수산물에서 유기물과 코팅사 등을 제거하는 전처리시설 지원하려는 것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지원장비 종류 확대, 홍보 강화 등 자원순환 인프라구축사업에 대한 어가의 신청률을 높여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6	손실보상금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내수면자원조성(3141-03)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보상 사업’ 은 손실보상금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되어 2022년도 및 2023년도 예산이 대부분 이월됨 - 피해어업인들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잔존시설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법령상 보상금 산정 및 집행이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 * 2022년: 예산현액 115억 6,300만원 중 114억 4,600만원 이월 2023년: 예산현액 173억 7,200만원 중 59억 200만원 이월, 114억 5,900만원 불용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보상’ 사업은 내수면 가두리양식 면허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에 대한 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손실보상금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7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집행부진 해소 방안 마련 등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연근해어선감척(3145-300)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경우 감척희망어민이 감정평가 이후 감척신청을 철회하는 비율이 28%정도('23년 근해어선 기준)이고, 2023년 예산액(1,325억원) 중 70.6%(936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집행하였음 ○ 감척사업 수행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량 증대, 잔존 어업인의 경영 여건 개선 등 감척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음 -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연근해 어선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구조조정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감척신청절차 개선 등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집행부진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수산자원량 증대, 경영개선 등 감척 효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할 것		
28	어선거래시스 템 활용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어선거래제도 운영(3145-302)	시정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2018~2023년 간 전체 어선거래 건수(49,384건) 대비 어선거래시스템을 이용한 계약건수 및 매물등록건수의 비율이 각각 연평균 0.18%, 3.65%로 연례적으로 저조함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합법적 어선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등 어선거래시스템의 활용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9	어선청년임대 사업의 사업방식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어선청년임대(3145-303)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어선임대차 거래를 중개하고 임대비 일부를 지원하는 현행 어선임대비 지원 사업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적정가격에 대한 이견 및 양호한 상태의 어선확보 곤란 등의 사유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등 사업여건에 어려움이 있어 2022년과 2023년 임대신청 건수(99건) 대비 실제 임대계약 건수가 18건으로 저조함 - 어선청년임대 사업은 어선을 매입 혹은 위탁받아 어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임대지원하여 신규 어선어업인 유입을 촉진하려는 사업임 ○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임대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조업현황, 조업실적 등을 점검하고 있으나 2022년·2023년 어선임차인 18명 중 13명의 조업실적이 누락되거나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사업규모 확대, 임차료 지원 비율 상향, 부정수급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고, 공단이 직접 어선을 매입·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업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30	전문 준설선을 활용한 어항준설 시스템 구축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국가어항관리(3345-302)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어항 준설을 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흡한 상황으로, 전문 준설선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전문 준설선 보강 등 준설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어항준설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1	여성어업인특 화검진 사업의 수검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어업인 삶의 질 향상(3440-312)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인원 1,800명 대비 검진인원이 674명으로 저조하여 예산액의 이월·불용이 발생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검진병원 확대, 특화건강 검진 항목의 차별성에 대한 홍보 등 여성어업인 특화 검진사업의 수검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32	외국인어업근 로자 복지회관 사업에 지자체 참여 제고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어업인 삶의 질 향상(3440-312)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지역별 어업형태의 차이, 기숙시설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 부족,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인해 외국인어업근로자 복지회관에 대한 일부 지자체의 참여가 미흡함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지역별 어업 특성 및 수요에 기반하여 외국인어업근로자 복지회관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효율성에 대한 홍보강화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제고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3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3440-372)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전기료 인상으로 농어가들의 경영상황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전기요금 한시지원사업 예산 확보 등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4	직불금 지급자격요건 의 합리화 등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수산공익직불제(3460-310)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어선원 직불금 지급을 위한 승선일수가 6개월 이상으로 다소 엄격한 측면이 있어 어선원 직불금의 2023년 계획(15,000명) 대비 지급인원(7,458명)이 49% 수준이고 2023년도 편성예산 180억원 중 89억 5,000만원을 실행함 * 현재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상 어업종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1년에 60일 이상이고, 일부 어종은 연간 실제 조업가능일수가 100일 미만임 - 어선원 직불제는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직불사업의 대상인원에 대한 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하고, 승선기간 등 어선원 직불금 지급자격 요건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그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5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의 의무이행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수산공익직불제(3460-310)	주의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수산자원보호직불’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이 계획(1,467척) 대비 69% 수준(1,017척)이고, 그 중에서도 44%(443척)만이 실제 직불금을 지급받고 있음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조업중단, 해양쓰레기 수거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이 실제 직불금 지급단계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의무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할 것		
36	신규펀드 조성 시 적정 수준의 기준수익률 설정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수산모태펀드 출자(3465-370)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수산모태펀드 기준수익률(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내부수익률)이 0%인 경우, 운용사는 펀드 청산 후 내부수익률이 0%만 초과하여도 성과보수를 지급받게 되어 운용사의 수익률 제고 노력이 저하될 수 있고 펀드 수익성을 주된 기준으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민간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될 소지가 있음 - 수산모태펀드 출자는 정부와 민간이 매칭펀드를 결성하여 성장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수산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수산식품사업자 등)에 투자하는 사업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운용사의 수익률 제고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규펀드 조성 시 적정 수준의 기준수익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7	민간제안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5050-315)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민간제안사업에서 사업방식 변경(BTO-a→BTO)에 따라 2023년에 민자사업자 선정이 지연되었고, 이에 정부지원사업 예산 25억 2,0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2024년도 5월에 민자사업자 선정이 최종 유찰되어 민자사업자 선정이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table><tr><th>구분</th><th>BTO-a (Build-Transfer-Operation-Adjusted)</th><th>BTO (Build-Transfer-Operation)</th></tr><tr><td>손익 부담</td><td> - 건설단계 : 건설보조금 없음 - 운영단계 · 손실발생시 : 최소사업운영비(70%) 보전 · 초과이익 발생시 : 이익공유(정부 70%) </td><td> - 건설단계 : 건설보조금 지급 - 운영단계 : 민간 운영 책임 (100%) </td></tr><tr><td>비고</td><td> 적용 : 도로, 하수처리장 등(항만사례 없음) - (수익률) 낮음/(리스크) 낮음 </td><td> - 적용 : 도로, 항만 등 - (수익률) 높음/ (리스크) 높음 </td></tr></table> ※ 2020년 민간제안서가 BTO-a 방식으로 제출, 2022년 KDI가 민자적격성조사에서 사업추진 타당성을 확보했으나, BTO 방식으로 추진 권고, 해수부가 BTO 방식으로 공고하면서 경제성 저하로 ' 24년 6월 현재 민자사업자 미선정 - 동 사업은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자사업의 정부지원 사업으로, 총 2,244억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880m와 도로 2,987m를 건설				구분	BTO-a (Build-Transfer-Operation-Adjusted)	BTO (Build-Transfer-Operation)	손익 부담	- 건설단계 : 건설보조금 없음 - 운영단계 · 손실발생시 : 최소사업운영비(70%) 보전 · 초과이익 발생시 : 이익공유(정부 70%)	- 건설단계 : 건설보조금 지급 - 운영단계 : 민간 운영 책임 (100%)	비고	적용 : 도로, 하수처리장 등(항만사례 없음) - (수익률) 낮음/(리스크) 낮음
	구분	BTO-a (Build-Transfer-Operation-Adjusted)	BTO (Build-Transfer-Operation)											
손익 부담	- 건설단계 : 건설보조금 없음 - 운영단계 · 손실발생시 : 최소사업운영비(70%) 보전 · 초과이익 발생시 : 이익공유(정부 70%)	- 건설단계 : 건설보조금 지급 - 운영단계 : 민간 운영 책임 (100%)												
비고	적용 : 도로, 하수처리장 등(항만사례 없음) - (수익률) 낮음/(리스크) 낮음	- 적용 : 도로, 항만 등 - (수익률) 높음/ (리스크) 높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정부지원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제안 사업의 추진가능성과 정부재정의 손실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간제안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을 책임성있게 결정할 방안을 강구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8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광양항(3단계)(5050-316)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은 안정적인 국내 자동화 항만 도입 및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광양항 3-2단계 컨테이너 부두(4선석)에 국내 기술 중심의 자동화항만(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을 구축하는 것으로, 2022년 및 2023년에 기초자료조사 및 총사업비 협의 등으로 시일이 소요되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실집행이 부진(’22년 29.3%, ’23년 0.6%)하였음 - 기초자료조사(’22.6~’23.7), 총사업비 협의(’23.7~11), 국토부 입찰서류 협의(’24.4~’24.6) 등 사업 발주를 위한 사전절차 소요로 사업이 지연 - 안벽크레인을 총사업비 협의 후 즉시 발주하였으나 장비제작 비용 상승에 따른 사업성 부족으로 유찰(’23.12~, 6회)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기반공사 및 항만장비 발주·계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사업설명회 등을 실시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방안을 강구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9	포항영일만신 항 (1단계) 사업관리 철저 방안 강구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포항영일만신항(1단계)(5050-323)	시정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남방파제(2단계) 사업은 당초 2023년 2월 공사를 발주하고 하반기에 우선시공분을 착공할 예정으로 7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기초조사(* 10년) 이후 물가변동과 설계기준 개정 적용 등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2022년 10월~2023년 7월) 및 총사업비 조정협의(2023년 8월~2024년 2월) 등 사전 행정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14개월 사업이 지연됨 ○ 집행부진에 따라 49억 6,100만원이 연도 중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되었고 남은 예산(예산현액 20억 3,900만원)도 연내 전액 불용되었음. - 포항 영일만신항(1단계) 사업은 2023년에는 포항영일만신항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남방파제(2단계) 축조를 위하여 예산이 편성됨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포항영일만신항 사업은 총사업비 협의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점을 감안하여 향후 공정을 차질없이 진행함으로써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방안을 강구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0	새만금신항 사업관리 철저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새만금신항(5050-324)	주의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2023년도 예산 239억 1,900만원 중 99.3%인 237억 6,300만원을 타 사업으로 과다 전용(새만금 신항 사업 중 내역사업으로 192억 조정하여 집행하였고, 45억은 타사업인 울산신항 남방파제 보강사업으로 전용) - 내역사업인 「방파제(연장) 사업」은 새만금신항 내 개발예정인 민자부두의 정온도 확보를 위해 기존 방파제(3.1km)에 250m를 추가로 연장하는 것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다른 사업으로의 예산조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새만금 신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파제(연장)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41	상왕등도항 남방파제 및 선착장 축조 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일반항(5059-302)	주의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021년도부터 추진되었으나 타당성재조사 추진 등으로 2022년 및 2023년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예산집행 실적도 부진하였음 ○ 타당성재조사를 피하기 위해 총사업비 감액했으나 축소한 준설물량 등에 대한 필요성과 추가재원 소요가 예상됨 - 동 사업은 전북 부안군 상왕등도항 내 해경·어업지도선 접안을 위한 방파제(접안시설) 및 선착장 확장 등을 통해 영해관리 및 도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이 2022년부터 지연된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변경된 사업비 내에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2	낙포부두 개축사업의 사업관리 및 안전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광양(여천)항(5059-303)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낙포부두 개축사업’ 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협의, 사업자 선정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예산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 21년 · ’ 22년 0%, ’ 23년 4.6%)하였고, 준공시점도 4년연장(2026년 준공→2030년 준공)될 것으로 보임 ○ 기존 낙포부두를 철거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면서 그 후면에 인접하여 신규 낙포부두 신축공사를 실시할 계획인데, 공사 진행과정에서 기존 부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동 내역사업에서 제외된 기존 5번선석 구간의 노후도가 심각함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이 추가 지연 없이 진행될 방안을 강구하고, 기존부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기존 5번 선석구간의 처리방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3	여수신복항 사업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여수신복항(5059-313)	주의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전남 여수에 국제적 해상관광 거점육성 및 여수신항 대체항만을 건설하기 위한 건축·전기·계류시설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당초 2021년 완료를 목표로 2013년에 시작되었으나, 공사 중 해경부두 변형이 발생하여 해경부두 기반복구공사를 실시하였고, 시공사 법정관리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준공시점이 2025년으로 연장되었음 - 해경부두 블록변위 발생원인에 대하여 국가(해수부)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기반복구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 추진과정에서 해경부두 기반복구 공사로 인해 본공사 및 후속공사가 순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계류시설, 전기 및 건축 등 후속공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해양수산부가 목표로 하는 준공시점인 2025년말까지 공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4	부산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조성 부지의 매각 업무 처리 부적절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부산북항 재개발(5061-300)	시정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부산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부지(상업·업무지구, D-3블록)를 민간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매수한 민간사업자가 계약과 달리 ‘관광숙박시설’에서 ‘생활숙박시설’로 부지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부산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음 ○ 부산시가 건축심의 협의과정에서 생활숙박시설 최소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 내용 검토를 해양수산부에 요청하였으나 해양수산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민간 사업자는 건축심의를 통과하여 최종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동 지구는 조성목표와 달리 사실상 주거시설로 변질되어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할 우려가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1단계)의 D-3 블록의 용도를 당초 제안한 대로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특급호텔)로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민간 사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방안을 강구할 것 ○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동 사업지 내 다른 구역(블록)에서 민간 사업자가 당초 제안한 내용과 달리 시설물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 협의 업무 등을 철저히 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5	묘도 항만재개발 정부재정 지원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기타항만재개발(5061-301)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묘도 항만재개발 기반시설 설치 사업(용수 및 배수시설 사업과 폐수 종말처리시설 사업)은 총사업비가 증가(추정 335억원→설계 685억원)로, 해양수산부는 재정당국과의 총사업비 협의를 1년 6개월 이상 지연하였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하면서 관련 예산이 불용 또는 이월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 묘도 재개발 용수 및 배수시설 사업: ' 22년 78억 1,400만원 중 실집행액 700만원, 36억 3,000만원 불용, ' 23년 10억 중 9억 9,500만원 타사업으로 전용(감액) 남은 500만원 불용 - 폐수 종말처리 시설 사업: ' 22년 22억 2,600만원을 전액 불용, 2023년 22억 전액 이월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향후 인허가 등 행정절차 및 공사업체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업관리를 면밀하게 하여 계획된 기간인 2026년말까지 동 사업을 완료할 방안을 강구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6	타당성 보완 및 부지확보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5063-304)	주의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항만구조물 안전성 검증 및 해안항만 건설기술 실증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도에 대형 수리모형 실험시설을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예산액 57억 1,500만원 중 99% 해당하는 57억 500만원을 타사업으로 전용함 - 2023년 57억 1,500만원 중 57억 500만원 타사업 전용, 남은 시설부대비 1,000만원은 사업 추진일정 순연으로 불용하여, 2022년에 이어 전액 미집행 ○ 당초 ‘2차원 수로 실험동’을 포함하여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를 건립하려는 계획이었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 중 3차원 수조 실험동을 추가 건립하기로 하면서 타당성재조사 등의 절차로 사업이 중단됨.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르면 국가(해양수산부)가 행정재산(강원도, 예정부지 소유자)에 건물을 건립하고 부지 무상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채납 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여 현재 건립부지가 불확실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사업계획 변경과 관계 법령에 대한 검토 미흡으로 부지확보가 어려워져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는 바,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타당성을 보완하고 부지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7	실집행 부진사업의 사업효과 측정방식 개선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산지유통시설지원(3031-301)	주의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사업자 선정 지연, 인허가 지연, 지역주민 반대에 따른 사업포기, 사업 수요 부족 등의 원인으로 17개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이 실집행률 50% 미만으로 나타남 ○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실시설계·지방재정투자심사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실집행률이 0%에 그침 -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은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및 청정위판장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실집행 소요를 면밀히 확인하고 사업과정 및 사업효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 및 성과측정 방식을 개선할 것		
48	어촌뉴딜300 사업의 잔여 공정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어촌뉴딜300(3301-30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어촌신활력증진(3301-303)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어촌뉴딜300사업의 경우 사업 첫해의 집행률이 49.2%로 저조하고 이후 연쇄적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문제가 발생함 ○ 어촌뉴딜300사업의 사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부실하여 다수의 사업지에서 당초 공모계획서와 다른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 300사업의 각 사업지별 잔여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기간 내 잔여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에서 사업기간 지연 및 사업선정 후 사업계획 변경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지별 실집행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9	정화운반선 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 및 사업 기간 연장 필요	관련사업명	수산발전기금-해양폐기물 정화(1065-301)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완도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설계 지연 및 시공사의 경영난 등으로 인해 정화운반선 건조 사업이 연례적으로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 정화운반선 건조 사업의 사업기간이 실제 소요기간(3년 이상)보다 과소 설정되고 있음 -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은 해양쓰레기 수거 사각지대인 도서지역 해양 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정화운반선 건조 지원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정화운반선 건조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건조 사업의 기간을 실제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하고 연차별로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할 것		
50	해양쓰레기 수거·정화명 령 제도 활용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수산발전기금-해양폐기물 정화(1065-301)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현행 「해양폐기물 관리법」상 해양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인자 책임부담원칙에 따라 처리·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수거·정화명령 제도 활용 및 이에 따른 대집행을 한 사례가 없음 -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 및 해양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발생원인자에 대한 해양쓰레기 수거·정화명령 제도 활용에 필요한 정책 연구, 대상자 선별법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1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증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수산물발전기금-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1065-306)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용자 수요자(소형유조선 사업자)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설계로 용자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2022년을 제외하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집행률이 최저 12.8%에서 최고 30.7% 수준)하고, 국회의 사업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 노력 미흡으로 사업을 조기 폐지함 -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은 소형유조선을 이중선저구조로 대체건조 또는 개조하는 경우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용자 사업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향후 유사 신규사업 추진 시 수요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규사업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한편, 소형유조선 공급이 감소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할 것		
52	사업 효과성 분석을 통한 사업 방향성 재정립 필요	관련사업명	수산물발전기금-비축사업(3066-302)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7개 품목에 대해 ‘비축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동 사업을 통한 수산물 구매·비축이 수산물의 생산지가격 및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지 않아 사업의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임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매년 대규모 예산(2020~2024년 비축사업 계획현액 6,702억원)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사업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대규모 예산 투입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비축사업은 수산물 주생산시기에 구매를 실시하여 산지가격을 지지하고, 명절 등 초과 수요 발생 시 방출하여 수산물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비축사업이 수산물 물가 안정에 미치는 효과성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동 사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3	침적 폐어구 수거 사업 수행 시 지자체와의 역할 분담 필요	관련사업명	수산발전기금-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3167-316)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현재 연안어장 및 근해어장의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사업을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연안어장의 해양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현재 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사업 수행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분담 방안 등을 강구할 것		

다. 농촌진흥청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낙찰차액을 이용한 계약체결 사업 추진 유의	관련사업명	공 통	제도개선	농촌진흥청
		지적사항	○ 농촌진흥청은 2023년 ‘농업기술’, ‘그린매거진’ 등 농업·농촌의 최신 소식을 전하는 소식지 제작과 K-농산어촌 한마당, 농업기술 박람회 등 행사 개최를 위하여 일반용역비를 집행하였는데, 일부 용역 계약사업의 낙찰차액을 다른 용역 계약의 일반용역비 부족분에 집행하는 등 원칙에 맞지 않는 집행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일반용역비 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되, 해당 용역의 수정계약 체결 시 추가소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임.		
		시정요구사항	○ 농촌진흥청은 퇴직 예정 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교육 용역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 편성 시 각종 홍보영상 제작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당초 예산 편성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을 통해 낙찰차액을 이용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치유농업연구소 기반 구축사업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치유농업연구소기반구축(1136-330)	제도개선	농촌진흥청
		지적사항	○ 치유농업기반구축 사업은 경남 김해시에 치유농업 확산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 72억원 중 42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25억 7,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7,600만원을 불용하였음. ○ 총사업비 조정 지연과 부지매입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1년 6개월 가량 지연되었으며, 토지수용재결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농촌진흥청은 향후 치유농업연구소 기반 구축사업의 사업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추가적인 지연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실집행률 50% 미만 부진 사업 집행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민간연구개발지원(R&D)(1148-650)	제도개선	농촌진흥청
		지적사항	○ 민간연구개발지원사업은 민간이 의뢰하는 시험수행을 위해 수입대체경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2023년의 경우 실집행률이 2.6%로 매우 부진함.		
		시정요구사항	○ 농촌진흥청은 민간연구개발지원사업의 실행 소요를 면밀히 확인하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집행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4	시험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 지양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축산시험연구(R&D, 책임운영)(1232-300)	제도개선	농촌진흥청
		지적사항	○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3년간 소방 안전관리 대행, 전기 안전관리 대행, 무인 경비 시스템, 승강기 유지보수 등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된 경비가 아닌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을 관리용역비가 아닌 시험연구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 관리용역비에 해당하는 사업 예산을 시험연구비에서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5조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임.		
		시정요구사항	○ 농촌진흥청은 연례적으로 관리용역비 세목의 예산에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관리용역비 예산을 편성하되, 예산의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정당한 내역변경 또는 이·전용 절차를 거쳐 집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축산자원개발부이전사업(R&D)(1232-305)	제도개선	농촌진흥청
		지적사항	○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은 현재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를 전남 함평군으로 이전하는 사업임. 2023년 농촌진흥청은 예산현액 962억 6,600만원 중 917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24억 7,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2.6%)하였으며 20억 9,200만원을 불용(2.2%)하였음. ○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은 기본설계 지연으로 실시설계에 착수하지 못하여 실시설계비 12억 5,5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고, 대상지 주민 일부를 위한 이주단지 후보지 선정 및 토지보상 협의 지연에 따라 건설보상비 2억 9,200만원이 이월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농촌진흥청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추진 시 보상과 총사업비 변경절차 등을 조속히 마치고 후속절차에 착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일정 수립을 비롯하여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등의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6	꿀벌 수급안정 지원사업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보조)(2231-300)	제도개선	농촌진흥청
		지적사항	○ 꿀벌수급안정지원사업은 이상기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스마트 사육환경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량 꿀벌품종을 증식·보급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도 충남·전남·경북 3개 지자체에 예산 36억원을 전액 교부하였음. - 그러나 1차 보조금 교부(3월) 후 사업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실제 사업 추진 가능 시기를 고려하지 않은 채 2차 보조금을 교부(5월)하여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가 미흡하였음. ○ 또한 실집행액은 7,700만원(실집행률 2.1%)에 그치고 35억 2,2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농촌진흥청은 사업 준비 단계에서 사전검토가 미흡하여 과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농촌진흥청은 꿀벌수급안정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 추진 전 소요기간, 입지여건의 특수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일정 수립과 지자체 신청모집 조건 개선이 필요하며,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을 배정·교부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고위험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구축사업 지자체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보조)(2231-301)	주의	농촌진흥청
		지적사항	○ 고위험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구축사업은 도농업기술원에 정밀진단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강원, 충남, 충북, 전남의 4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별 5억원의 국고를 지원하였음. - 지자체의 실집행률은 강원은 71.4%, 충남은 69.6%로 상대적으로 저조함. ○ 국고보조금은 사업 추진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 반납이 원칙인데, 충남의 경우 동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한 고위험병해충 및 농업재해 피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한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2023년 12월 계획 변경 수립)하였고, 관련 예산을 이월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농촌진흥청은 고위험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구축사업 추진 시 지자체의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라. 산림청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대체산림자원조 성비 미수납 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법정부담금(59-593)	주의	산림청
		지적사항	○ 법정부담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미수납액은 2020년 428억 1,000만원 → 2023년 689억 9,100만원으로 증가추세이고, 법정부담금 전체 채납액 중 10억원 이상의 경우가 38.8%(174억 9,000만원)의 비율을 차지함.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고액채납자가 다수 존재하므로, 장기간 미납자에 대하여 불이익처분 등을 고려하고 미수납채권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미수납 규모를 줄여 나갈 것		
2	대체산림자원조 성비 징수를 제고를 위한 납부방식 개선 및 관련 법령 개정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법정부담금(59-593)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대부분 후납이 되고 있으나, 산림청의 부과징수업무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징수결정액은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되고 징수를 부진이라는 악순환이 매년 되풀이됨으로써 사업성과를 왜곡시킬 뿐 아니라 수허가자가 법적인 의무없이 선납부담을 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 최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징수율은 2021년 87.4%에서 2022년 80.8%, 2023년 74.7%로 감소추세 - 2020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과정에서 징수를 제고 노력에 관한 시정사항이 요구되었으나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선납 또는 후납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납부방식을 개선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시점을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 명확히 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과다한 세목조정 지양	관련사업명	공통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산림청의 2023년도 세목조정 건수 및 규모는 1,971건 및 176억원에 달하고 있음. - 국가가 2022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결산 시 과다한 세목 조정을 지양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으나, 여전히 시정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비목별 집행소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비목별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국회에서 심사한 비목별 한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여 국회 시정요구사항을 준수 할 것		
4	녹색자금을 산림청 소관 세입·세출예산 으로 편입할 필요	관련사업명	공통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국고보조금(2023년 결산 기준 421억 9,500만원) 외에 녹색자금을 수탁·운용하고 있는바, 녹색자금의 재원은 복권기금이고 복권기금의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이므로 산림복지 수요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이 어려움. - 녹색자금은 복권기금(법정배분금)에서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녹색자금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녹색자금을 산림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한국형 산림녹화 프로그램 확산 사업’의 분절적 집행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산림협력(1331-3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한국형 산림녹화 프로그램 확산’은 일반용역비(210-14목)로 편성되었으나, 실제 사업내용은 개발도상국 산림 관계 공무원을 초청하여 무상 연수프로그램을 추진한 것으로, ① 일반용역비(210-14목)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은 문제, ② 용역기관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미흡 문제, ③ 실질적 ODA 성격의 초청연수사업임에도 초청대상국(12개국)의 50%는 정부 ODA 중 점협력국에 해당하지 않는 등 산림청만의 분절적 사업수행 및 사업의 효과성 저하의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한국형 산림녹화 프로그램 확산 사업이 실질적 ODA 성격의 초청연수사업이므로 ODA 사업예산으로 편성·집행하여 정부 ODA 정책의 일관성 및 선택과 집중에 따른 지원의 효과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실제 집행내역에 맞게 국외업무여비, 일반수용비, 임차료 등으로 나누어 편성·집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국립양묘기술체 험관 건립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해소를 위한 사업 관리 철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묘목생산(1533-300)	주의	산림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국립양묘기술체험관 건립’ 사업 예산현액은 16억 7,100만원인데, 이 중 94.2%인 15억 7,4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이러한 집행부진은 동 내역사업이 시작된 2022년도부터 연례적으로 지속됨으로써 사업기간은 당초 3년에서 4년으로 1년 더 연장됨.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국립양묘기술체험관 건립 사업의 집행부진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설계부터 착공 등 사업 단계별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7	전력공급 약관상 농사용 전력에 중요생산업 포함 방안 강구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묘목생산(1533-3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국유양묘장 묘목생산’은 한국전력공사가 양묘장 사용전력을 농사용 전력에서 제외함으로써 위약금(전기료 및 면탈금의 증가액) 납부를 위해 세목조정(1억 1,487만원)을 한바,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 약관 개정사항은 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해 보임.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농업과 임업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전력공급 약관상 농사용 전력에 중요 생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의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국토녹화 50주년 행사 관련 다수 세부사업 예산에서 목적 외 집행 주의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림정책개발(1532-3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국토녹화 50주년 행사 관련 사업(13개)은 다수 세부사업(산림정책개발 사업 등 일반회계 2개, 조림 등 농특회계 2개)의 예산을 이·전용 등 절차 없이 분할·집행하였고, 관련 영상제작 용역들은 중복 추진되었으며, 13건의 일반용역계약(6억 4,020만원)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됨. - 서로 다른 회계 및 단위사업을 통해 소요 예산을 분할·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국회 및 재정당국이 사업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없게 만드는 부적정한 집행임. - 국토녹화 50주년 행사 관련 수의계약상대방(11개 업체) 중 7개 업체와는 2년 이상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함.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국가재정법」 및 예산집행지침 등에서 정한 이·전용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용역과제를 발주하기 전 상호중복성 검토를 통해 유사한 용역계약이 수행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한편, 특정 업체에 편중된 계약은 특혜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산림복지부처 협력사업의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의 통합·운영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림정책개발(1532-300), 산림교육치유허성화(1743-302)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산림복지부처협력사업’은 ‘산림정책개발사업’의 목적과 관련성이 낮고, 산림교육치유허성화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청소년 녹색체험교육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육성·관리와 사업목적 및 대상 등에서 동일한 내용임. ○ ‘산림교육강화’ (산림교육치유허성화 사업의 내역사업)에서 예산의 목적 외 집행에 해당하는 사례(4건, 1억 3,070만원)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산림복지부처협력사업’을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통합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연계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반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의 집행관리에 있어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성과 부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림과학연구(R&D)(1251-300)	제도개선	국립산림 과학원
		지적사항	○ 성과지표인 ‘산림과학논문 영향력 지수(점)’의 2022년도 및 2023년도 목표 대비 실적은 98.4% 및 87.7%로 2년 새 10.7%p 하락하였고, 기술이전 계약건수 및 기술료는 2020년 53건, 15억 2,200만원에서 2023년 30건, 3억 5,300만원으로 크게 감소함. - 전체 논문 건수는 2020년 356건 → 2023년 264건, SCI논문 건수는 2020년 148건, → 2023년 122건으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임. - 국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국립산림과학원 대하여 연구인력의 외부강의 실태를 점검·감독하여 연구인력이 연구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사업의 질적 성과를 제고하도록 시정요구한 바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립산림과학원은 본연의 업무인 R&D 사업에서 논문 건수(SCI 논문 건수)와 기술이전 계약건수 및 기술료 등의 실적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으므로, 정량적·정성적 성과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국회 예산안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의적 예산집행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림생물종연구(R&D)(1131-301), 정원산업 기반구축(R&D)(1131-302), 산림과학연구(R&D)(1251-300)	주의	국립산림 과학원
		지적사항	○ 국립산림과학원은 2022년도 1월에 국립산림과학원 석·박사 연구원의 보수를 상향조정하고도 처우개선분을 2023년도 예산안에 미반영하고 예산집행과정에서 석·박사 연구원의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이 부족하게 되자 예산의 이·전용 등 절차 없이 해당 부족액을 당초 예산이 편성된 산림과학연구(R&D) 사업과 프로그램(항)을 달리하는 ‘산림생물종연구(R&D)’ 및 ‘정원산업기반구축(R&D)’ 사업을 통해 집행함. - 상용임금 부족액(5억 3,300만원) 중 2억 9,000만원을 ‘산림생물종연구(R&D)’ 및 ‘정원산업 기반구축(R&D)’ 사업에서, 고용부담금 부족액(4억 6,300만원) 중 800만원)을 ‘정원산업기반구축(R&D)’ 사업에서 이·전용 등 없이 사용하였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의무도 미이행함. - 예산 범위에서 운용해야 하는 상용임금에 관한 예산집행지침도 위반함.		
		시정요구사항	○ 국립산림과학원은 석·박사 연구원의 보수인상분을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이·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업의 재원을 통해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국제 및 남북산림협력 연구’ 사업의 목적 외 집행 주의 및 ‘열대·아열대 임업기술개발공적개발원조(R&D, ODA)’와 차별성 확보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림과학연구(R&D)(1251-300)	주의	국립산림과학원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국제 및 남북산림협력 연구과제’ 사업에서 최근 5년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과제와 다른 세부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연구과제가 추진된 것으로 보임. - ‘국가 산림자원 육성 방향 설정을 위한 산림기본계획 개선 방안 연구’, ‘산림자원 순환경제를 위한 산림자원 통계 및 정보 구축 방안 연구’, ‘주요 용재수종의 가치 제고를 위한 산림관리 기술 개발’, ‘WTO 지위와 FTA 변화를 고려한 임산물 교역모형 개발’ 등은 동 내역사업의 목적인 SDGs의 국내이행, 남북한 산림협력 방안 구축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인도네시아 이탄지 지역사회 발전모델 개발을 통한 ODA 적용방안 연구’는 다른 세부사업인 ‘열대·아열대 임업기술개발 공적개발원조(R&D, ODA)’의 사업내용과 인도네시아 이탄지에 대한 복원기술 개발연구사업이라는 점에서 유사·중복됨.		
		시정요구사항	○ 국립산림과학원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과제를 추진하지 않도록 새로운 과제발굴에 노력하고, 사업목적과 대상 및 내용에서 유사한 연구를 추진하면서 서로 다른 세부사업에 예산을 분산·편성하는 방식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목적 외 집행 주의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림과학연구(R&D)(1251-300), 기후영향 적응연구(R&D)(1251-305),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연구(R&D)(1251-306), 농림위성융합 지능형 산림특화정보기반연구(R&D)(1251-402), 기상이변 대응 새로운 밀원수종 개발로 꿀벌보호 및 생태계보전(R&D)(1251-404)	주의	국립산림 과학원
		지적사항	○ 국립산림과학원은 2023년도 시험연구비 예산으로 미국 대학교수 및 공무원 등 외국 전문가 8명의 초청경비(체제비, 왕복항공운임, 강연수당 등)로 약 3,400만원을 집행한 바, 이는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기간에 맞춰 추진된 것으로 파악됨. - 전체 행사 프로그램에 따르면, 해당 외빈이 국제세미나 및 국제심포지엄 참가 외에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에 참여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립산림과학원은 국회가 의결한 R&D 시험연구비 예산의 목적과 용도를 준수하여 집 행하도록 노력하고, R&D 연구과제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등 행사와 병행하여 외빈초청경비의 집행 등 부적절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산림분야 특성화고 지원’ 사업의 교육부 사업과 중복 해소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촌활성화 지원(1742-3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산림분야 특성화고 지원사업’은 임업 분야 인재 육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지원대상(특성화고) 및 지원내용 측면에서 <u>교육부 및 농식품부가 수행하는 사업들과 유사하여 기능적으로 중복될 소지가 있음.</u>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산림분야 특성화고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교육부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의 중복지원을 해소하고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부처간 협업 및 정보 공유 체계의 강화를 통해 유사·중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할 것		
15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완료에 대응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촌활성화 지원(1742-3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은 2024년부터 일몰 폐지로 예산지원이 종료되었는데, 산림청은 예산 사업 종료와 함께 지원 혜택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별도의 관리계획도 수립하지 않아 해당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4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45억 1,8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중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총 37억 4,500만원으로 332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원을 받음.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들에 대한 별도의 관리계획도 수립하지 않아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보조사업의 연례적 실집행 부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정임산물이용증진(1535-300)	주의	산림청
		지적사항	○ 주요 내내역사업들(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부진하여 매년 상당 규모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함. - 보조사업별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2021년도 4개 사업에서 67.3%, 2022년 6개 사업에서 56.4%, 2023년 6개 사업에서 38.9%로 감소추세임.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사업 내 지자체 보조사업의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연례적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실집행 실적이 부진하여 두 차례나 국회의 시정요구(18년, 20년)를 받았음에도 연례적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집행 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긴급별채 사업의 연례적 이·전용 및 예비비를 통한 예산집행과 예비비 과다편성 주의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목재생산관리(1540-3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긴급별채’는 매년 예산액이 부족하여 예비비 편성 및 이·전용을 통해 집행하고 있고, 예비비를 과다하게 배정받아 실집행을 부진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예산액 대비 예비비 비율은 2019년 0%, 2020년 2,847.8%, 2021년 0%, 2022년 3,285.0%, 2023년 651.3%로, 2019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본예산 대비 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한 측면 - 최근 5년간 지자체 교부액 대비 집행잔액(불용액) 비율은 2019년 3.1%, 2020년 4.4%, 2021년 10.5%, 2022년 23.5%, 2023년 53.8%로 급증하는 추세임.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긴급별채 사업의 최근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긴급별채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의 면밀한 검토 및 산주 동의 여부를 예비비 요구에 앞서 미리 확인하는 등 예비비 추산의 정확도를 제고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8	분석검정장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임업진흥원 지원(1542-300)	주의	산림청
		지적사항	○ 한국임업진흥원은 2023년도 분석검정장비현대화 예산(7억 3,800만원) 중 2억 1,265만원 (예산액의 28.8%)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고, 예산의 목적 외 집행은 매년 반복되고 있음. - 2021년도는 예산액 8억 2,000만원 중 4,056만원을, 2022년도는 예산액 7억 3,800만원 중 2,985만원을 직원용 책상 등 사무가구, 복합기 및 소형금고 구매 등에 집행		
		시정요구사항	○ 한국임업진흥원은 분석검정장비 취득예산을 사무비품 구입 등에 집행하는 등 목적 외 사용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9	분석검정장비 구매계약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임업진흥원 지원(1542-3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최근 3년간 분석검정장비 구매계약 중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55.8%, 2022년 40%에서 2023년 76.2%로 급증함.		
		시정요구사항	○ 한국임업진흥원은 분석검정장비를 구매함에 있어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것		
20	고가시험분석장 비의 가동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임업진흥원 지원(1542-3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2023년 결산 기준 고가분석검정장비 65개 중 18개(27.7%)는 연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100시간 미만(월평균 8.3시간)으로 저조하고, 10개 장비는 가동시간이 감소 추세임.		
		시정요구사항	○ 한국임업진흥원은 고가시험분석장비 중 가동시간이 적거나 활용빈도가 저조한 장비에 대해서는 산림청 소관의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등 장비가동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산지연금형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유림 확보 및 관리(1543-302)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사유림매수 제도 중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한 실적(면적)은 목표치 대비 저조한 실정이 고, 사유림 매수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경우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2019-2028)」에서 설정한 국유림 확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 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2021년~2023년 3년간 매수실적은 일시지급형이 10,982ha, 산지연금형이 834ha로 산지연금형의 매수실적이 극히 저조함. - 2023년 기준 매수단가는 산지연금형이 2,467만원/ha로 일시지급형 매수단가 1,137만원/ha의 2배를 초과함.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산지연금형과 일시지급형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비용 대비 사업효 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산지연금형이 일시지급형에 비해 매수단가가 높아 매수 실적이 저조하고 연금 지급기간이 10년으로 고정되어 있어 산주의 선택권이 제한되며 현행 고정 지가상승률(2.85%)이 사업참여 유인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산지연금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2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의 정량적 평가기준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지관리(1736-3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의 저감 목표를 별도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소음·진동 등이 어느 정도 절감되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확인하여 재원 배분 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년-2024년)에서는 2016년 대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35% 이상 저감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산업, 농업·생활 등 부문별 저감 대책을 제시 - 성과관리계획서상 성과지표는 ‘산지관리 만족도(점)’, ‘산지분야 대국민 소통 및 제도개선 실적(진)’ 인바, 동 내내역사업의 효과성 및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 사업의 정량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환경피해 저감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사업의 효과 및 성과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할 것		
23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의 참여율 제고 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지관리(1736-3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의 최근 3년간 등록 대상사업자 대비 신청사업자 비율은 2021년도 4.2%, 2022년도 4.5%, 2023년도 4.7% 수준에 불과함. - 실행률은 2021년 46.8%, 2022년 59.4%, 2023년 74.0%이고, 이월승인사업자 규모는 2021년 12개소, 2022년 11개소, 2023년 11개소(평균 전체 참여사업자 중 32.2%)임.		
		시정요구사항	○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 사업 참여업체의 중도 포기에 따른 집행 부진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전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참여율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사업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예산편성 및 집행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림교육치유허성화(1743-302)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문수산(전북 고창) 치유의 숲 운영자산 구매’ (4억 1,300만원) 예산으로 2022년도 완료 사업인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 을 통해 구축된 문수산 치유의 숲 운영에 필요한 물품(체지방측정기 인바디 등)을 구매 - 이는 ① 산림휴양복지증진지원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② 다른 세부사업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 (1741-303)에서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 자산 교체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어 중복됨.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문수산 치유의 숲 운영자산 구매와 같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업내용의 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취지를 저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5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의 공정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1740-311)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연례적인 이월 발생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에서 2024년까지 2년 연장되었고 총사업비도 827억원에서 909억 8,400만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실집행 가능한 규모를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예산편성에 따른 것임. - 다음연도 이월 규모는 2018년 14억 4,400만원, 2019년 6억 1,900만원, 2020년 1억 7,300만원, 2021년 25억 7,900만원, 2022년 62억 8,900만원, 2023년 175억 8,900만원임.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공사가 추가적인 지연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잔여 공정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6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자체수입 예산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1741-303)	주의	산림청
		지적사항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023년도 당초 자체수입예산(62억 3,200만원)보다 22억 9,400만원이 많은 85억 2,6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전액 당해연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바, 해당액만큼 국비가 과다지원되는 결과를 초래함.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필요경비 총액에서 자체수입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당해연도 이익잉여금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되어 시설운영 등 사업비로 집행되는데, 이익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다음연도 예산 증가 효과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사업의 자체 수입예산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불필요한 국비의 초과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7	정원 지원시설 건립 사업의 연례적 사업추진 지연 해소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원 조성관리 사업(1740-312)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정원 지원시설 건립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으나, 2023회계연도에도 예산이 이월되는 등 실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함. - 2023년도 결산 기준, 예산현액 341억 2,800만원 중 85억 2,800만원을 이월하고 2억 1,200만원을 불용 처리함. -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공사자재비 등 물가상승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정원 지원시설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 진도관리를 통해 사업추진 지연을 최소화하고 실집행률을 제고하여 국회 시정요구사항을 준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8	산사태 피해복구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집행방식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림재해대책비(1931-308)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산림재해대책비 중 집행액 기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산사태 복구사업 추진 에서 재해발생 시점과 지자체 국고 교부 시점 간 괴리가 발생하고 연계성이 미흡함. - 2023년도 산사태 발생 시점부터 복구계획 확정 및 지자체 예산 교부까지 약 6개월여 소요, 국고 교부 완료 후 12월부터는 동절기임을 고려할 필요 【 2023년 산림재난별 지자체 국고보조, 직접사업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산사태</th><th colspan="3">산불</th><th colspan="3">소나무재선충병</th></tr><tr><th>지자체 국고보조</th><th>직접</th><th>소계</th><th>지자체 국고보조</th><th>직접</th><th>소계</th><th>지자체 국고보조</th><th>직접</th><th>소계</th></tr><tr><td>2023년</td><td>23,835</td><td>5,683</td><td>29,518</td><td>3,652</td><td>-</td><td>3,652</td><td>7,400</td><td>2,610</td><td>10,010</td></tr></table> 자료 : 산림청										구분	산사태			산불			소나무재선충병			지자체 국고보조	직접	소계	지자체 국고보조	직접	소계	지자체 국고보조	직접	소계	2023년	23,835	5,683	29,518	3,652	-	3,652	7,400	2,610	10,010
		구분	산사태			산불			소나무재선충병																																
			지자체 국고보조	직접	소계	지자체 국고보조	직접	소계	지자체 국고보조	직접			소계																												
2023년	23,835	5,683	29,518	3,652	-	3,652	7,400	2,610	10,010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전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예산의 적기 지원을 통해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9	산림재해대책비 (일반연구비)의 한국치산기술협 회에 집중된 수의계약 방식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림재해대책비(1931-308)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산림재해대책비의 일반연구비 연구과제 대다수는 수의계약을 통해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집중됨. - 최근 5년간 총 연구과제 17건(12억 5,600만원) 중 한국치산기술협회에 13건(11억 1,700 만원)을 위탁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산림재해대책비 중 연구용역비가 수의계약으로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고 경쟁계약을 확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0	항공보험 관련 범정부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림헬기 도입·운영(1936-3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최근 5년간 항공보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적게는 15억 2,000만원(예산액의 30.2%)에서 많게는 47억 600만원(예산액의 99.9%)까지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고, 연례적으로 보험료가 과다하게 편성되는 경향임. - 정부 항공보험계약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통합발주 및 종합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2023년도 종합계약의 평균 낙찰률은 전체 예산액의 45.2% 수준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소방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등 기관별 항공보험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항공보험요율 산출기준 마련을 위해 협의할 것		
31	산불진화헬기 임차도입 사업의 임차비용 추산의 정확도 제고 필요	지적사항	○ 산림청은 해외에서 대형헬기 5대, 중형헬기 2대의 임차를 위해 예비비 369억 3,700만원을 배정받았다가 그 중 114억원(예비비의 30%)을 불용처리한바, 예비비를 과다하게 배정받은 측면이 있음. - 산림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산 KA-32 헬기 부품 수급이 어려워 2024년도에 15대 헬기의 가동 중단 및 산불의 대형화에 대비하여 해외 산불진화헬기를 임차하였으나, 가동 중단이 예상되는 러시아산 KA-32 헬기 수량을 과다 추계함으로써 미집행액이 과다 발생 - 2023년도 말 기준, 산불진화헬기(총 48대) 중 러시아산 기종은 총 20대(60.4%)임.	제도개선	산림청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산림헬기 예비부품 활용 및 기관 간 부품 융통을 감안하여 가동할 수 있는 헬기의 수량에 대한 정확한 추산을 통해 헬기 임차비용을 적정수준으로 산출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2	국산 산림헬기 도입을 통한 부품·정비 대외리스크 해소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림헬기 도입·운영(1936-3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러시아산 KA-32 헬기 엔진 부품 수급이 지연되어 산림헬기 가동률이 저하되고 산불 진화 대응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됨. - 산림헬기 평균 가동률은 2020년 82.2% → 2022년 67.1%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대외리스크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국산 헬기 도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헬기·부품 공급선의 다변화 방안을 강구할 것		
33	스마트 산림재해 대응체계 시스템 장애 발생 원인 분석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스마트 산림재해 대응(정보화)(7035-507)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스마트 산림재해 대응체계 사업으로 구축된 시스템에서 예측하지 못한 장애가 2년 연속 발생함. - 2022년에 프로그램 장애로 접속 불가 상황(14분간), 2023년에 메모리 부족으로 기능 장 애(18분간)가 있었음.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2025년 추진계획인 산림재난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 획의 수립에 앞서 스마트 산림재해 대응(정보화) 시스템의 장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 여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4	한국치산기술협 회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적정성 검토 및 경쟁체제 도입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방사업(1939-300), 산사태재난 경계피난(1939-301)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산림청이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위탁한 용역 및 연구개발 계약의 규모는 2019년 4개 과제에서 29억 5,000만원 → 2023년 9개 과제에서 53억 400만원으로, 2019년 집행액 대비 79.8%(23억 5,400만원) 증가함. - 최근 3년간 한국치산기술협회의 수익금은 2021년 27억 5,100만원 → 2023년 55억 600만원, 성과급은 2021년 13억 7,500만원 → 2023년 44억 7,300만원(수익금의 81.2%)으로 급증함.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최근 3년간 한국치산기술협회의 수익금 급증이 사방사업 타당성조사 등 용역사업을 독점수행하면서 과도하게 사업비를 지급받은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고, 향후 용역사업방식을 다른 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로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5	연례적 집행부진 지자체 보조사업의 관리 강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목재산업육성(1535-303)	주의	산림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의 2023년도 평균 실집행률은 6.5%(강원 춘천 4.6%, 충북 괴산군 8.1%)에 불과하고, 특히 서울 노원·부산 사상·경기 광주·충북 충주 등 4개 지자체는 실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신규 지자체보조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매뉴얼 마련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지자체의 사업수행 역량 제고에 노력할 것		
36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목재산업육성(1535-303)	주의	산림청
		지적사항	○ 산림청은 2023년도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의 보조금 교부 시 지방비가 미확보된 지자체(서울 노원구, 부산 사상구, 경기 광주시)와 저조한 실집행실적으로 계획대로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지자체들에 보조금 전액을 교부함으로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을 미준수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는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취소 및 연례적 이월의 최소화를 명시하고, 보조금 교부는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하되, 1차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함.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 어긋나게 보조금을 교부 및 관리함으로써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7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목재산업육성(1535-303)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및 ‘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에 따라 보급된 보일러 31,121대 중 2023년도 기준으로 9,689대가 가동되고 있어 평균 실가동률은 31% 수준에 불과하여 사업성과가 상당히 부진함. - 사업 초기 단계인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목재펠릿보일러 보급대수는 23,417대였으나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목재펠릿보일러 보급대수는 7,704대로, 초기 단계의 약 3분의 1에 불과함. - 낮은 가동률은 비싼 연료가격, 목재펠릿 판매처 부족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사업성과 부진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용 목재펠릿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및 판매처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탄소중립정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8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한 국고보조금 교부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목재이용증진(1535-304)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 는 2023년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전액(2억 5,000만원)을 교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처리됨. - 보조사업자인 서울시 노원구의 공사 계획상 2023년 4월까지 추진된 설계에는 실내부분은 공간구획만 해당되고, 실내인테리어 공사가 포함되지 않아 동 내역사업을 일정 기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산림청은 해당 지자체의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여 예산집행지침상 보조금 교부원칙을 위반함.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국고보조금 교부와 관련된 일반적 제한조건들에 대한 검토 후 적절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9	임업기계장비의 활용률 제고 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임업기능인양성(1540-301)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국유림임업기계장비보급’, ‘지자체임업기계장비보급’, ‘임업기계지원센터지원’의 성과지표인 임업기계장비 활용률은 2020년 89.0%에서 2021년 51.2%로 급감한 후 2022년 44.5%, 2023년 46.6%에 머물러 있고, 2023년도 임업기계장비의 활용빈도는 1대당 36.5일로, 이는 1개월에 3일 정도 사용 수준임. - 2020년 77.2일(국유림), 83.9일(지자체) → 2023년 37.4일(국유림), 40.6일(지자체)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임업기계장비 활용실적 제고를 위해 지자체 및 산림조합과 지속적인 협의, 임업인에 대한 임업기계장비 홍보 및 장비운영 교육 등 방안을 강구할 것		
40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품목 조기 선정 및 입찰공고 등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임업기능인양성(1540-301)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국유림임업기계장비보급’의 2023년 결산 기준 다음연도 이월 규모(10억 5,100만원)는 예산액(55억 7,700만원)의 18.8%임. - 다음연도 이월액 규모는 2020년 2,300만원 → 2023년 10억 5,100만원으로 4년간 45.7배가 증가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도입 사업의 다음연도 이월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이월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비 선정을 직전 연도 말까지 완료하고, 입찰절차 등 추진 일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1	선금 지급 시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 규정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임업기능인양성(1540-301)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산림청은 2023년도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구매계약에 대한 선금 지급 시기와 관련하여 「국고금 관리법」 및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을 위반함. - ‘떨쳐’ 및 ‘타워야더’ 구매계약은 각각 10월 하순 및 12월 하순에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사고이월이 예상되는데도 계약금액의 68.5% 및 80%를 선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을 위반함. - ‘타워야더’ 구매계약의 경우 연도말(2023.12.26.)에 선금을 지급하여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 보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임업기계장비 선금 지급에 있어 「국고금 관리법」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을 준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2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 실집행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도시바람길숲 조성(자율)(1734-301)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산림청은 지자체의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전 행정절차의 미이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기한 내 완료 실적은 50% 미만에 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지자체의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보다 국고보조금을 과다교부하여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교부원칙을 위반하고 있음. - 2019년 이후 사업기한이 완료된 총 15개소의 사업지 중 기한 내 완료된 사업지는 7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8개소는 이월 또는 재이월됐는데 특히 1개소는 2024년 5월말 기준 미완료 상태임.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보조사업자인 지자체에 대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보조금 교부원칙을 준수하여 적정한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예산 실집행부진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특성상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적극 의견을 제시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3	임도 타당성평가 사업의 한국치산기술협 회 독점 시정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임도시설(지원)(1536-302)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2023년도 임도 타당성평가 6건(계약액 20억 4,400만원) 전부 ‘한국치산기술협회’에서 수탁하였는데, 한국치산기술협회를 임도 타당성평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음. - 2022년도 실시된 5건(계약액 7억 3,600만원)도 전부 한국치산기술협회에서 수탁함. - 임도 타당성평가 전문기관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도 없이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집중하여 임도 타당성평가 용역을 수의계약한 것은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례임.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임도 타당성평가 사업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제도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의계약을 통해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집중하는 사업추진 방식을 시정할 것		
44	임도 타당성평가 사업의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하는 과목으로 편성·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임도시설(지원)(1536-302)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임도 타당성평가 사업을 일반용역비(210-14목)로 편성·집행한 것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위반되는 것임. - 일반용역비(210-14목)는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임.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예산과목별 집행지침에 부합하게 임도 타당성평가 사업예산을 일반용역비(210-14목)가 아닌 일반연구비(260-01목)로 편성·집행할 것		

마. 해양경찰청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변상금 수납물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세입결산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국유재산 무단점유 등으로 인한 변상금 부과 후, 소송진행, 채납자 재력부족,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수납률이 4년 평균 19.5%에 불과하고, 불납결손액이 발생하고 있음. - 국회의 지속적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은 해양경찰청의 변상금 수납의지가 약하기 때문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경찰청은 변상금 발생원인 차단 및 변상금 회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2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사업의 연례적 세목조정을 통한 신규 행사 추진 지양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3001-300)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사업에 ‘해양안전포스터 공모전’과 ‘연안안전의 날 해양안전 캠페인’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연례적으로 세목조정 등을 통하여 관련 경비가 집행되고 있음. - 위 2건의 행사 관련 경비를 집행하기 위하여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사업 내 일반용역비를 2023년에 6,700만원 증액 조정하였고, 2022년에도 1,200만원을 증액 조정한 바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경찰청은 예산 세목조정 등을 통해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해양안전포스터 공모전’과 ‘연안안전의 날 해양안전 캠페인’의 예산 편성 여부 결정을 위해 그 효과성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신규 대형헬기 도입 사업 관리 강화 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항공기도입(3101-301)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신규 대형헬기 1대(5호기) 사업’은 광역해역에서 장시간 다목적으로 운용 가능한 대형헬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기간이 4년(‘23년 ~ ’26년)인데 1년차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전체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대형헬기가 적기에 현장 배치되지 못할 가능성 - 동 사업은 업체 무응찰로 계약이 유찰되어 2023년도 예산액 11억 4,900만원 전액이 이월되었음. - 유찰 사유는 2022년 2월 발생한 러·우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인데, 예산 편성 당시 제작사에 구두로 확인한 금액에 기초한 잘못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경찰청은 사업 계획 전에 세부적인 편성근거를 마련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사업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차별 예산 규모를 조정할 것		
4	무인기 사고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경비대테러역량강화(3102-300)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해양경찰청은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드론보험, 유지보수, 조종인력 양성, 드론 도입 등 무인기 관련 사업에 6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최근 무인기 사고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지출이 발생하고 있음.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무인헬기 사고는 총 6건 발생하였는데, 4건은 기체결함, 2건은 조종미숙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해양경찰청은 무인기 사고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지출 방지를 위해 향후 안정성이 검증된 기종 선정 및 조종사의 조종역량 강화 등 무인기 사고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민간위탁사업비 과다편성 후 연례적 이용 등 행태 시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의사경찰활동지원(3102-302)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범처리’ 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가 예산 편성단계부터 과다계상되어 다른 용도의 사업을 위한 여유재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2020년의 경우 7억원이 함정정비유지비 시설장비비 부족분 지원, 2022년과 2023년은 공공요금 및 공무원 보수 부족의 사유로 지방관서인건비등으로 이용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경찰청은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	계획되지 않은 신규 내역사업 추진 지양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진압및전투장비관리(3104-303)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노후방독면 교체’ 사업은 내용연수 10년을 초과한 노후 방독면 952개 교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방탄헬멧(1억 7,000만원) 및 진압장비(3,300만원)구입 비용으로 집행하여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을 위반 - 해양경찰청은 방독면 제조업체 간 소송문제(특허분쟁)로 조달청 구매계약이 반려되어 방독면을 구입하지 못함.		
		시정요구사항	○ 해양경찰청은 연례적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노후방독면교체 사업 예산으로 계획되지 않은 신규 내역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방제정 건조사업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방제정 건조(4334-300)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신설서 방제정 1척 건조’ 사업은 신설서인 사천서에 배치할 방제정을 건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사업비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1억 7,800만원이 이월되고 2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실적이 없는 상황임. - 동 사업은 사업기간이 2023년 ~ 2026년으로 1차 연도인 2023년도에 조선소 무응찰 등의 사유로 계약이 유찰되어 사업비 1억 7,800만원이 이월되었음. - 2024년. 4월에야 건조사와 계약이 체결(계약기간: ' 24.4.1. ~ '27.2.15.)되어 전체 사업 공정 지연 우려		
		시정요구사항	○ 해양경찰청은 방제정 건조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연차별 예산 규모를 조정할 것		
8	지방관서 인건비 예산의 과도한 이·전용 지양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방관서인건비(7201-101)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지방관서인건비 사업의 예산은 8,009억 1,1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는데, 2023년도 초과근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13개의 세부사업에서 이용 132억 2,600만원, 전용 83억 700만원, 내역변경 27억 1,200만원을 실시하였음. - 당초 계획에 없던 청년인턴사업의 인건비 마련을 위해 지방관서인건비에서 13억 9,300만원을 ‘치안지원인력사업(7203-314)’ 으로 전용하였다가, ※ ‘23.1. 국무조정실의 “청년인턴 활성화 추진계획” 에 따라 100명을 채용하였다가 20명이 퇴사하여 집행잔액 2억 5,200만원 발생함. - ‘치안지원인력사업(7203-314)’ 에서 지방관서 보수 부족 등을 이유로 ‘지방관서인건비(7201-101)’ 로 다시 전용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경찰청은 향후 예산안 편성 시 명확한 산출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관서인건비의 과도한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공공요금및제세 연례적 이전용 최소화 등 국회시정요구사 항 준수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방관서기본경비(7202-251)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지방관서기본경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의 적정 규모 예산 미편성에 따라 연례적인 이·전용을 통한 부족 예산 충당 양상이 반복되고, 주요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이·전용 등을 통해 공공요금및제세를 증액한 예산의 합계는 101억 8,200만원으로, 연평균 20억 3,640만원의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부터 공공요금및제세 과목으로 변경하여 부족분을 충당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경찰청은 지방관서기본경비 공공요금및제세 과목의 최근 연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전용을 최소화하는 등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을 준수할 방안을 강구할 것		
10	해양경찰청의 공직기강 확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책소통및감사감찰활동(7203-300)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해양경찰청 직원의 갑질, 성비위 등으로 인한 징계건수가 증가하면서 소청 및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자문비용 지출이 증가하고 있음. - 연간 징계건수는 2019년 91건에서 2023년 113건으로 증가 - 해양경찰청의 징계처분 결과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한 건수는 2019년 27건에서 2023년 52건으로 증가 -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도 2019년 0건에서 2023년 18건으로 증가		
		시정요구사항	○ 해양경찰청은 공직기강을 확립함으로써 법집행 기관으로서 신뢰를 회복하고 법률자문비용의 지출을 최소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해경 홍보관 활용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무활동(7203-301)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해양경찰청 청사 안에 홍보관을 만드는 데 2009년 3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2023년 ‘해경의 날 70주년’ 을 맞아 부분적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데 4,464만원을 집행하였음에도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유관기관의 요청에 의해서만 공개하는 등 해경 홍보관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경찰청은 해경의 역할과 활동상에 대해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관 운영 지침」 신설 등 홍보관의 활용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2	R&D 사업 주관 연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골든타임사수를위한수색구조기술개발R&D(7239-611)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동 사업 중 ‘연안고립자용 한국형 전천후 구조보트 개발’ 과제는 갯벌 등에서 운용이 가능한 구조보트를 개발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액 3억 3,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3,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억 7,200만원 중 집행액은 2,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4.5%에 불과함. - 최초 주관연구기관 회사 대표(연구책임자)의 구속으로 과제수행을 포기한 데 이어, 새로 변경된 주관연구기관이 기업경영악화를 사유로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여 2023년 사업이 종료되면서 일부 연구성과물 매몰 우려		
		시정요구사항	○ 해양경찰청은 R&D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 시 재무정보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증하고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정산금 환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동 과제의 성과물을 연계·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연구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연구개발(R&D) 14개 사업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해양경찰청의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규모와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연구개발사업을 기획·총괄하는 전담조직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해경의 연구개발사업의 사업 수 및 예산은 2014년 1건 9.8억에서 2023년 14건 518.1억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사업 수 14배, 예산액 52.9배 증가), - 현재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예산배분·성과관리 등의 기능을 해양경찰청 본청 장비기획과 계단위(연구개발계)에서 2명(정원기준)의 직원이 수행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경찰청은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보강할 방안을 강구할 것		

(3). 시정요구사항(예비비)

가. 농림축산식품부

해당사항 없음

나. 해양수산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예비비 사업에서 사전준비 미흡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3040-317)	주의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해양수산부는 예비비 59억 9,500만원을 배정받아 ‘산지위판장 수산물 안전관리 사업’을 신규 추진했으나, 수요조사 부실, 사업타당성 부족 등으로 인해 일부 사업의 추진이 중단되거나 그 실적이 저조하여 배정된 예비비 중 23억 6,400만원(39.4%)을 불용하였음 - 산지위판장 수산물 안전관리 사업은 산지위판장 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분석, 시료채취 등을 실시하는 사업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사업 추진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비를 배정하여 사업추진이 중단되거나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수산물 위생관리사업에 배정된 예비비의 집행을 저조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수산물 위생관리(3041-303)	주의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해양수산부는 예비비 59억원을 배정받아 양식장 생산단계에 있는 수산물을 검사하는 사업인 ‘수산물 위생관리(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방사능검사필증지원 예산의 집행이 저조하여 배정된 예비비 중 29억원(49%)을 집행하고 6억 4,500만원(10.9%)을 불용함 - 수산물 위생관리(유해물질안전관리강화-방사능검사필증지원) 사업은 안전 수산물을 증명하기 위해 양식장에 대해 방사능 검사필증을 교부하는 사업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 배정된 예비비의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예비비의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의 효과분석 미흡 및 연례적 예비비 지출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3044-340)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은 수산물 가격할인이 가격상승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 한 종합적 분석 없이 2022년과 2023년 각각 200억원, 942억 7,900만원의 예비비가 배정 되었음 -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은 온·오프라인 업체,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시 전용상품권 발급, 업체할인 지원 등을 통해 가격할인을 지원하는 사업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상생할인지원이 시장 및 물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증하고, 예비비 배정의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것		
4	수산물 품질관리사업에 배정된 예비비 집행을 저조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수산물품질관리(3045-301)	주의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해양수산부는 예비비 9억 6,100만원을 배정받아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주요 위판장 등 방사능 검사를 추진하였으나, 배정된 예비비 중 7억 4,300만원(77%)을 집행하 고 2억 1,800만원(23%)을 불용함 - 수산물 품질관리는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운영, 수산물 안전성조사, 수산식품 인증제 운 영,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제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원산지 표시 조사 및 주요 위판장 방사능 검사에 배정된 예비비의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예비비의 집행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다. 농촌진흥청

해당사항 없음

라. 산림청

해당사항 없음

마. 해양경찰청

해당사항 없음

(4). 부대의견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원 확대 등 방안을 강구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당근 등 품목의 생산성 회복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 직불제 및 경축순환 직불제 등 선택형 공익직불금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임업직불금이 농업직불금에 비해 손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현장에서의 온열 질환 발생에 대응하여 무더위쉼터를 마련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요금체계 개편안 마련 시 농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료·색소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기타주류가 아닌 탁주로 인정하도록 하는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책방향을 검토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쌀을 활용한 가공산업 활성화, 국산 쌀 고급화, 쌀 의무자조금 도입 노력, 전략작물

대폭 확대, 쌀 적정면적 재배, 친환경 쌀 재배 확대 등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에 중소유통경로도 참여하여 물가 안정 및 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온라인 유통업체 미정산 사태 관련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먹거리 조달 비용 등을 고려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한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방식을 적절히 개선한다.
- 폭염으로 인한 가축폐사가 심각한 상황에서 축사시설 개선이 필요함에도 관련 예산이 매년 감소 중이고 농가 자부담률이 높아 어려움이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자부담률 및 사업신청요건 완화 등 관련 대책을 검토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한우 할인 판매 확대 등 한우가격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한우의 수출 장려, 선제적 수급 방안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출하에서부터 도축단계까지 근출혈 문제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 종식에 따른 업계 피해 지원에 필요한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확산 관련 대책을 검토하여 보고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구제역백신 양산체제 확립을 위해 백신제조시설 구축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들이 살인진드기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질병관리청과 협업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양곡매입 방식이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명확히 해당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협경제지주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등 사후정산 관련 절차와 규모 등이 예산에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나.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대응과 어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편성된 예비비의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비비의 편성 및 집행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한다.
- 해양수산부는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사업 관련하여 2024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향후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해양수산부는 국가어업지도선 건조사업의 잔여공사 재개 전까지 기성물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밀검사 등을 통해 기성물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잔여공정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해양수산부는 우리 조사선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 조사 활동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항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
-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관련 사업신청 및 증빙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우체국 택배·섬 지역 소상공인을 사업지원대상에 포함하고 택배비(추가택배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사업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 해양수산부는 소형선박 수리조선소가 친환경 항만시설로 변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한다.
- 해양수산부는 평택 신국제여객부두 야적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신여객터미널 뒤 유희부지에 추가 야적장 부지 확보를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해양수산부는 추후 평택 신국제여객터미널 위탁업체 선정 시 평택시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한다.
- 해양수산부는 제주 특화 항만 구축 및 동북아 크루즈 모항으로의 발전을 위해 정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제주 신행을 조속히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해양수산부는 2023년 11월에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사업의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원활한 크루즈 유치를 위해 2단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 해양수산부는 양식등재해대책비 내역사업인 이상수온대응지원 사업 집행 시, 현재 고수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육상 양식장에도 액화산소 공급기 등 장비가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의 어획량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해양수산부는 선박엔진 임시검사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검사받는 동안 조업도 못하므로, 어업인 편의와 안전한 조업환경이 조화될 수 있도록 임시검사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해양수산부는 동해안의 해역 특성을 반영하여 마을어업의 수심한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해양수산부는 전국 어촌계장에 대한 활동비 등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다. 농촌진흥청

- 사업별 성과지표 달성 미달사업이 전체의 15%에 해당하는데, 기제출한 미달 사유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4년 연속 목표를 미달성한 사업도 있으므로 성과지표를 철저히 관리한다.

라. 산림청

- 산림청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예산의 집중편성을 통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소나무 재선충병에 저항성이 강한 소나무 품종 개발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도록 노력한다.
- 산림청은 산불로 훼손된 산지를 산주 동의 없이 긴급하게 벌채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바, 긴급벌채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산림청은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산림헬기 외주정비 결산내역과 실제 집행내역 간에 불용헬기 6대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바, 향후 국회 제출 결산서에 오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은 해양조사 관련 자료를 국회에 성실히 제출한다.
-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구조활동 시 민간 협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한다.
- 해양경찰청은 무인헬기의 구매비용을 고려할 때 운용시간이 저조하므로 활용 확대 방안을 강구한다.
- 해양경찰청은 응급상황 및 불법조업 단속에 대응하기 위하여 헬기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